

위험물 예방규정

202 년 월 일

※ 본 예방규정 표준양식은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부내용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이 가능함

[사업장명 :]



목 차



제1장. 총 칙	01
제1조 총칙	01
제2조 목적	01
제3조 적용범위 및 준수의무	02
제4조 용어의 정의	03
제5조 예방규정의 개정	03
제2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및 보조자에 관한 사항	04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04
제7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	05
제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및 보조자에 관한 사항	06
제9조 안전관리조직	06
제3장.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07
제10조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07
제11조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08
제12조 자체소방대 조직	09
제13조 자체소방대 임무	12
제14조 화학소방자동차	13
제15조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의 점검 등	14
제4장.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5
제16조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의 대상	15
제17조 안전교육	16
제18조 안전교육 내용	17
제19조 소방훈련	18
제20조 소방훈련 내용	19

제5장.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20
제21조 안전순찰	21
제22조 안전순찰 방법	22
제6장. 위험물·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4
제23조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등의 점검	24
제24조 자체안전점검	26
제25조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및 보고	28
제26조 시설의 정비	28
제7장.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29
제27조 운전 및 조작	29
제28조 운전 절차의 준수	32
제8장.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33
제29조 위험물 취급 시 안전수칙	33
제30조 위험물 취급 시 작업 안전절차	37
제31조 화기 작업	38
제32조 기타 안전수칙	39
제9장.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0
제33조 이송취급소의 공사 관리	40
제34조 이송취급소의 안전 관리	41
제35조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	42
제10장.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43
제36조 비상연락체계	43
제37조 비상대응조직	44
제38조 비상 대응 매뉴얼	45
제39조 비상대응 훈련	47
제40조 피난 계획 수립	48
제41조 비상설비 관리 및 운전	49

제11장. 위험물의 안전에 대한 기록에 관한 사항	51
제42조 위험물 안전관리 기록	51
제12장. 제조소등의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52
제43조 서류 및 도면의 정비	52
제13장.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3
제44조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53
제45조 소방시설 유지관리	53
제14장. 부칙	54

제1장 총 칙

제1조 총칙

제1조(총 칙) 이 규정은_____ (주소)에 소재하는_____ (사업장명)의 (예시) 제조소, 옥외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및 일반취급소(대상 제조소등 명시)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물 예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작성요령>

- 예방규정을 적용할 사업장 범위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2조 목적

제2조(목 적)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운전하는 때의 위험물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고,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조치 등 예방활동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성요령>

- 예방규정의 법적 근거 및 운영 목적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준수 의무

제3조(적용범위 및 준수 의무)

①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및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업장 내 예방규정 적용 대상 제조소등 목록(예시)

번호	제조소등 구분	유별	품명	물질명	저장·취급 위험물의 최대수량	지정수량 의 배수
1	제조소	제6류 산화성액체	과산화수소	과산화 수소	000L	00배
2	옥외저장소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경유	000L	00배
3	옥내저장소	제6류 산화성액체	과산화수소	과산화 수소	000L	00배
4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휘발유	000L	00배
5	암반탱크저장소	-	-	-	000L	00배
6	이송취급소	-	-	-	000L	00배
7	일반취급소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등유	000L	00배

② 준수 의무

1. ○○○사업장 임직원 및 모든 출입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성요령>

- 예방규정을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및 준수 의무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②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 ③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④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 ⑤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 ⑥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⑦ -----

<작성요령>

- 가능한 관계법령에서 정의하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예방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한다.

제5조 예방규정의 개정

제5조(예방규정의 개정)

- ① 당해 사업장에서 예방규정을 개정할 경우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방규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2. 자체소방대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소방차의 증감은 제외함)
 3.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재예방방법 또는 진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③ 예방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수반하여 예방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설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
 2.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이 없이 예방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정된 예방규정을 시행하기 전
- ④ 000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 첫장의 “예방규정 제정·개정이력”란에 기재한다.

<작성요령>

- 예방규정 제정 및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 예방규정 제정 및 개정 시 관할소방서의 승인 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2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및 보조자에 관한 사항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제6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각각의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위험물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1호 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작성요령>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관련된 법적 요건(자격, 재선임, 신고, 기록 등)을 기재한다.

제7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

제7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

- ①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위험물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 마.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른다.
- ③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대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취급하도록 한다.
-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배정된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도록 한다.

<작성요령>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기술한다(법적 직무 포함).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명시한다.

제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및 보조자에 관한 사항

제8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및 보조자에 관한 사항)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1. 위험물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②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안전관리자의 보조자를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작성요령>

- 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보조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9조 안전관리조직

제9조(안전관리조직)

① 사업장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휘, 조정, 통제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는 000으로 한다.

② 안전관리조직은 각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 구성한다.

③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 중복선임 유무, 담당 제조소등, 취급 위험물 등에 대한 사항을 제1호 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1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대장

안 전 관리자	대리자	보조자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자격요건 및 선임일자)	제조소등의 구분	위험물 현황
○○○ (위험물○○○) (24.05.01.)	○○○ (위험물○○○) (22.03.02.)	○○○ (실무교육) (24.06.13.)	1.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1. 제○류 ○석유류 (○○○kℓ)	• TK-○○○
○○○ (위험물○○○) (22.01.04.)	○○○ (실무교육) (21.05.01.)	○○○ (위험물○○○) (22.03.02.)	2. 제조소 (○○○제조공정)	1. 제○류 ○석유류 (○○○kℓ)	• ○○○제조공정

<작성요령>

- 각 제조소등마다 담당 안전관리자를 배정한다.
- 각 제조소등마다 배정된 안전관리자의 담당 취급시설, 취급물질, 자격요건 및 중복선임여부 등을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3장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제10조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제10조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위험물법 제19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 내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1.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법 제73조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
2.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작성요령>

-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 대한 법령을 명시하고, 사업장이 설치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제11조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제11조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은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2대	10인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제1항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배치한다.

③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제1항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작성요령>

- 위험물법에서 규정하는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12조 자체소방대 조직

제12조 (자체소방대 조직)

① 자체소방대는 화재, 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한다.

② 자체소방대 조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자체소방대장(직책 이름)
2. 자체소방부대장(○○ ○○○)
3. 지휘통제반
4. 초기소화반
5. 비상연락반
6. 피난유도반
7. 응급구조반
8. 방호안전반
9. 화학소방차 운영반



<자체소방대 조직도(예시)>

③ 자체소방대 조직에 대한 사항을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자체소방대 일반현황 및 편성표”에 기록한다.

④ 자체소방대 운영 시에는 비상통제실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 경우 자체소방대 조직은 비상통제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작성요령>

- 자체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목적을 기술한다.
- 자체소방대의 조직, 인원, 지휘통제 체계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기재한다(별첨으로 별도로 작성 가능).

[제2호 서식] 자체소방대 일반현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 업 소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소 <input type="checkbox"/> 일반취급소 <input type="checkbox"/> 옥외탱크저장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취 급 위 험 물 최 대 수 량	<input type="checkbox"/>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		<input type="checkbox"/>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input type="checkbox"/>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input type="checkbox"/> 48만배 이상 <input type="checkbox"/> 50만배 이상	
상 시 근 무 인 원	<input type="checkbox"/> 50명 미만	<input type="checkbox"/> 50명 ~ 100명	<input type="checkbox"/> 100명 ~ 500명	<input type="checkbox"/> 500명 초과
운 영 시 간	<input type="checkbox"/> 평일	<input type="checkbox"/> 주간 시 ~ 시	<input type="checkbox"/> 휴일	<input type="checkbox"/> 주간 시 ~ 시
		<input type="checkbox"/> 야간 시 ~ 시		<input type="checkbox"/> 야간 시 ~ 시

구 성	자 체 소 방 대	총원	명	근무형태	<input type="checkbox"/> 상근직 <input type="checkbox"/> 교대직 (조교대)		
		지휘통제반	명	대장	명 부대장 명		
		현 장 대 응 반	명	<input type="checkbox"/> 비상연락반	명	<input type="checkbox"/> 응급구조반	명
				<input type="checkbox"/> 초기소화반	명	<input type="checkbox"/> 방호안전반	명
	<input type="checkbox"/> 피난유도반			명	<input type="checkbox"/> 소방차운영반	명	
	화 학 소 방 자 동 차	대수	대	편성인원	명		
구분		<input type="checkbox"/> 포수용액 <input type="checkbox"/> 분말 <input type="checkbox"/> 할로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이산화탄소 <input type="checkbox"/> 제독차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임 무	자 체 소 방 대	대장	
		부대장	
		<input type="checkbox"/> 비상연락반	
		<input type="checkbox"/> 초기소화반	
		<input type="checkbox"/> 피난유도반	
		<input type="checkbox"/> 응급구조반	
		<input type="checkbox"/> 방호안전반	
		<input type="checkbox"/> 소방차운영반	

※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 운영반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자체소방대 초기소화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른 사업소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 화재의 진압활동 및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등을 임무에 포함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3호 서식] 자체소방대 편성표

자체소방대		소 속	성 명	개 별 임 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 통제팀	대 장					
	부대장(I)					
	부대장(II)					
현장 대응팀	비상연락반					
	초기소화반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					
	방호안전반					
	화학소방차 운영반					
화학소방자동차		소 속	성 명	개 별 임 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조	평일 주간 시~ 시					
조	평일 야간 시~ 시					

제13조 자체소방대 임무

제13조 (자체소방대의 임무)

① 자체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체소방대장은 자체소방대를 지휘·통제하고 총괄하여 운영한다.
2. 자체소방부대장은 자체소방대장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대리한다.
3. 지휘통제반은 수신반, 종합방재실을 거점으로 화재상황의 모니터링 및 지휘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4. 비상연락반은 화재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원 소집, 비상연락 및 화재신고의 임무를 수행한다.
5. 초기소화반은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 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한 화재 진압의 임무를 수행한다.
6. 피난유도반은 화재경보(육성, 경종, 비상방송 등)를 울리고, 사업장 내 종사자 및 출입자에 대한 피난명령 및 유도의 임무를 수행한다.
7. 응급구조반은 응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조치(지혈, 심폐소생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8. 방호안전반은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위험물시설의 비상정지 및 중요 물품 반출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9. 화학소방차 운영반은 화학소방자동차의 점검 등의 임무와 소방훈련 및 비상사태 시 화학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초기소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화학소방자동차 운전 및 조작용은 자체소방대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한다.

<작성요령>

- 자체소방대의 조직 별 임무를 상세히 기재한다..
- 화학소방자동차 운전 및 조작용의 겸직을 지양하는 조항을 작성한다.

제14조 화학소방자동차

제14조 화학소방자동차

① 화학소방자동차의 댓수와 화학소방자동차의 편성인원에 대한 사항을 서식 제3호의 “자체소방대 편성표“에 기재한다.

② 화학소방자동차의 사진, 제원 및 세부사양에 대한 사항을 별첨 제3호의 “화학소방자동차 제원 및 사양“에 기재한다.

③ 화재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소방훈련을 하는 경우의 화학소방자동차의 지휘는 다음 각 호에 지정된 자로 한다.

1. 화재 발생 시: 자체소방대장(000), 부재 시 자체소방부대장(000)

2.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소방훈련 시: 소방훈련 계획(서식 제5호)에 따라 지정된 자(000)

④ 화학소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한다.

1. 당해 사업장 내 화재사고 등 비상사태 사고발생의 경우

2. 인근 사업장 응원요청이 있을 경우

3. 현장 순찰 및 소방차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4. 소방훈련 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하는 경우

⑤ 화학소방자동차는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규정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⑥ 000은 화학소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 제1호의 “화학소방자동차 정기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작성요령>

-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 및 조작인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 화학소방자동차의 지휘통제권한에 대하여 기술한다.
- 화학소방자동차 운영 시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 화학소방자동차의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제15조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의 점검 등

제15조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의 점검 등

-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 등의 점검을 실시한다.
1. 정기점검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정밀점검 : 화학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에 특수한 결함·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 ②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 등의 점검횟수는 최소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③ 점검을 실시하기 전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 등의 점검 계획을 제4호 서식의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 점검 계획”에 작성한다.

제4호 서식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 점검 계획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일 상 점 검	□ 정기점검	점검시기	매월	일	
		점검횟수	매월	회 이상	
	□ 정밀점검	점검구분	□ 최초 정밀점검	□ 정기 정밀점검	
		점검시기		월	일
특 별 점 검	□ 특별점검	점검자	□ 자체	□ 외주	
		점검원인	□ 결함·고장	□ 사고	
		발생일시		월	일
		점검시기		월	일
		점검자	□ 자체	□ 외주	
점검결과	□ 예방규정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보관방법	□ 전자문서		□ 기타()		

※ 비고

- 점검 수행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하되, 외주 업체에 대행 시 점검업무를 관리·감독 해야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 시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수행한다.

④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 제2호의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 점검 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⑤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 점검 등의 업무를 외주 업체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점검업무 일체를 관리·감독 하도록 한다.

<작성요령>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약제 및 기구 점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제4장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16조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의 대상

제16조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의 대상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협력업체 포함)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작성요령>

- 안전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 소방훈련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제17조 안전교육

제17조 안전교육

- ①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신규 교육: 신규 채용자 또는 보직이 변경된 자에 대하여 실시(최초 00시간)
 2. 정기 교육: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연 00회 및 00시간 이상 실시
 3. 특별 교육: 위험물 취급 방법 변경, 신규 설비 도입 및 사고 발생 후 등 필요한 경우 실시
- ② 교육훈련 대상 및 일정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제5호 서식의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연간계획”에 기재한다.
- ③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0년간 보존한다.
- ④ 000은 안전교육 실시 후 도출된 사업장 내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조치를 한다.
- ⑤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국어로 된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통역을 지원하여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호 서식]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연간계획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 상 자	<input type="checkbox"/> 근무자	명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명
	<input type="checkbox"/> 자체소방대	명		

교육·훈련

대상자	구분	연간계획(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근무자	안전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방훈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체 소방대	안전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방훈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00	안전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방훈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성요령>

- 업무 수행 대상별 안전교육 과정을 분류한다.
- 안전교육 과정별 연간 교육시기 및 기존 교육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교육의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안전교육의 미비점 등 개선 계획을 기술한다.

제18조 안전교육 내용

제18조 안전교육 내용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예시).

1. 신규 교육

- 가. 위험물법, 관계법령 및 사업장 규정
- 나. 취급 위험물의 특성 및 취급 방법
- 다. 위험물 취급 시설 및 설비의 구조(構造)와 취급 절차
- 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 마.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 바. 비상 시 대응 절차 및 방법
- 사.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2. 정기 교육

- 가. 위험물법, 관계법령 및 사내 규정의 변경 사항
- 나. 위험물 취급 절차 및 방법의 변경 사항
- 다. 신규 위험물 취급 시설 및 설비 도입에 따른 안전 조치
- 라. 최신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 마. 비상 대응 절차 및 방법의 변경 및 보완 사항
- 바. 안전 의식 고취 및 안전 문화 확산 방안

3. 특별 교육

- 가. 변경된 위험물 취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신규 도입된 위험물 취급 시설 및 설비의 구조(構造)와 취급 방법
- 다.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 라. 비상 상황별 대응 절차 및 방법의 변경 및 보완 사항
-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성요령>

-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 별 내용을 작성한다.

제19조 소방훈련

제19조 소방훈련

① 소방훈련은 사업장 내 자체소방훈련과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합동소방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소방훈련의 종류에 따른 훈련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예시).

1. 자체소방훈련 : 분기 00회
2. 합동소방훈련
 - 가. 관할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연 00회
 - 나. 상호응원협정 사업장 합동소방훈련: 연 00회
3. 00소방훈련 : 연 00회

구 분	실시시기	훈련내용
자체 소방훈련	○회/분기	- 000
불시 소방 및 구조 구급훈련	○회/년	- 긴급 메시지 전송, 상황전파, 초기진화, 소화활동, 훈련평가
합동소방훈련	○회/년	- 기초 + 부분 + 종합훈련으로 실시
실전 소방훈련	○회/년	- 화재유형별 강행침투, 진압훈련, 진화 요원의 행동 요령 숙지

③ 소방훈련 대상 및 일정 등의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제5호 서식의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연간계획”에 기재한다(제17조 참조).

④ 소방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훈련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한다.

⑤ 000은 소방훈련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작성요령>

- 자체소방훈련 및 합동소방훈련 등으로 구분한 소방훈련의 연간계획을 기재한다.
- 소방훈련의 구체적 시기 및 실시 횟수 등을 기술한다.
- 소방훈련에서 발생한 미비점 등 개선 계획을 기술한다.

제20조 소방훈련 내용

제20조 소방훈련 내용

① 소방훈련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각 목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1. 화재 발견, 신고 및 전파 훈련
 - 가. 화재 발견 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초기 대응
 - 나. 화재 신고 요령 및 신고 내용(화재 위치, 규모, 상황 등)
 - 다. 사내 비상방송 및 화재 경보 발령을 통한 상황 전파
2. 비상연락 및 지원요청 훈련
 - 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가동
 - 나. 상호응원협정 사업장 및 유관 기관 지원 요청 절차
 - 다. 자체소방대 및 유관부서 간 비상연락망 운영
3. 지휘 및 상황 통제 훈련
 - 가. 화재 현장 지휘체계 확립 및 역할 분담
 - 나. 진행 상황 파악 및 보고 체계 운영
 - 다. 자체소방대 및 지원 기관 간 합동 대응 지휘
4. 초동 조치 및 의료 구호 훈련
 - 가. 대상 설비 긴급정지 절차
 - 나. 위험물 및 유해물질 누출 초동 차단 조치
 - 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진화 활동
 - 라.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절차
5. 피난 및 방호 조치 훈련
 - 가. 화재 위험 구역 내 근무자 대피 유도
 - 나. 중요 문서 및 자료 반출 절차
 - 다. 화재 확산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
6. 사후 복구 훈련
 - 가. 화재 현장 잔화 정리 및 안전 확인 절차
 - 나. 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 계획 수립
 - 다. 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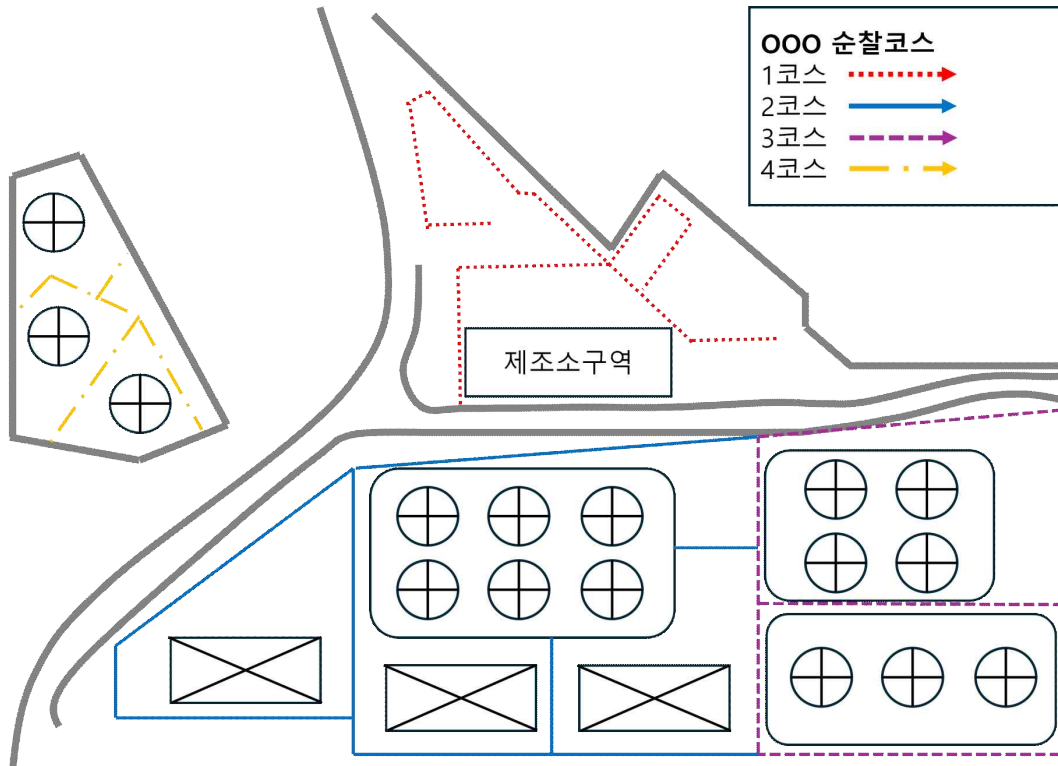
- 소방훈련의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제5장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제21조 안전순찰

제21조 안전순찰

① 사업장 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순찰 구역 및 순찰경로를 지정하고, 안전순찰 도면에 표시한다(예시).



② 안전순찰 구역별로 담당 부서 및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예시).

1. 저장소 구역: ○ ○ 부서 / 책임자 ○ ○ ○
2. 제조소 구역: ○ ○ 부서 / 책임자 ○ ○ ○
3. 이송취급소 구역: ○ ○ 부서 / 책임자 ○ ○ ○
4. 사무동 구역: ○ ○ 부서 / 책임자 ○ ○ ○
5. 위험물 운반 및 하역 구역: ○ ○ 부서 / 책임자 ○ ○ ○
6. OOO 구역: ○ ○ 부서 / 책임자 ○ ○ ○

③ OOO는 지정된 안전순찰 구역별로 순찰 주기, 중점 점검 사항 등을 포함한 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서식 제6호의 “위험물 순찰계획”에 작성한다.

[제6호 서식] 위험물 순찰계획

1. 관련근거 :

2. 순찰방법

가. 방 법 :

나. 순찰대상 :

다. 순찰내용 :

3. 순찰코스

NO	장소	비고
1		
2		
3		
4		
5		

4. 순찰 중 이상징후 발견 시 조치사항 :

5. 순찰결과 기록유지 :

④ 순찰자는 제3항의 순찰 계획에 따라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다음 각호의 순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순찰일지”에 기록한다.

1. 순찰 일시, 순찰자, 순찰 구역 등 기본 정보

2. 위험물 시설 내 설비의 작동 상태, 누출 및 손상 여부 등 점검 결과

3. 소방 시설의 작동 여부 확인 결과

4. 기타 안전관리상 발견된 문제점 및 조치 사항

⑤ 000은 안전순찰 결과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 신속한 보수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작성 및 보고된 안전순찰일지는 1년간 보관한다.

<작성요령>

- 위험물시설의 안전순찰 코스 등을 정하고 실제도면에 표시한다.
- 안전순찰 구역에 대한 담당 부서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22조 안전순찰 방법

제22조 안전순찰 방법

① 제조소 내 안전순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예시).

1. 원료 투입구역: 매일 00시, 00시, 00시에 순찰을 실시하며, 가스 검지기를 사용하여 누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2. 반응기 구역: 매 교대조 근무 시작 후 00분 이내에 순찰을 실시하며,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여 반응기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저장구역: 매일 00시, 00시, 00시에 순찰을 실시하며, 액위계 및 압력계의 지시값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② 옥외저장소 내 안전순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예시).

1. 저장탱크 구역: 매일 00시, 00시, 00시에 순찰을 실시하며, 탱크 외벽의 손상 및 변형 여부, 플랜지 연결부의 누출 흔적을 육안으로 점검한다.
2. 보호포 및 트렌치 구역: 매주 0요일과 0요일 00시에 순찰을 실시하며, 내부의 고인 물 또는 기름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제거한다.

③ 옥내저장소 내 안전순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예시).

1. 저장실: 매일 00시, 00시에 순찰을 실시하며, 위험물 용기의 손상 및 변형 여부, 라벨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2. 통로 및 출입문: 매일 순찰 시 통로의 장애물 유무, 비상구 개방 여부, 잠금장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④ 옥외탱크저장소 내 안전순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예시).

1. 저장탱크: 매일 00시, 00시, 00시에 순찰을 실시하며, 탱크 외벽의 부식 및 손상 여부, 기초부의 침하 또는 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2. 방류벽 및 집유설비: 매주 0요일과 0요일 00시에 순찰을 실시하며, 방류벽의 손상 여부, 집유설비 내 고인 물 또는 기름 등을 점검한다.

⑤ 암반탱크저장소 내 안전순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예시).

1. 주입구 및 펌프실: 매 교대조 근무 시작 후 00시간 이내에 순찰을 실시하며, 밸브 및 펌프의 누출 여부를 점검한다.
2. 공동 구역: 매일 0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암반의 균열 및 누수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⑥ 이송취급소 내 안전순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예시).

1. 하역설비: 작업 개시 전, 작업 중 00시간 간격, 작업 종료 후 순찰을 실시하며, 호스 및 집결관의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2. 펌프 및 밸브류: 매 교대조 근무 시작 후 00시간 이내에 순찰을 실시하며, 펌프 베어링 온도, 밸브 개폐 상태를 점검한다.

⑦ 일반취급소 내 안전순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예시).

1. 취급 장소: 매일 00시, 00시에 순찰을 실시하며, 바닥의 균열 및 침하 여부, 전도방지 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2. 안전 설비: 매월 0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환기설비, 제전설비, 접지설비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⑧ 순찰자는 순찰 시 누출검지기, 가스측정기, 방폭형 카메라 등 구역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 장비를 휴대한다.

⑨ 야간순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순찰자는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조명 장비를 휴대한다.

2. 야간순찰 경로는 주간과 달리 조명 및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⑩ 순찰 중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000부서 및 000에게 보고하고, 해당 구역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000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요령>

- 위험물시설 별 또는 안전순찰 경로 별 순찰방법을 상세히 기재한다.
- 위험물시설의 안전순찰 경로, 횟수, 방법, 보고 등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 안전순찰시 이상 발견된 문제점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안전순찰 후 발견된 문제점을 작성, 관리한다.

제23조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등의 점검

제23조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① 위험물법 제18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사업장의 제조소등에 대하여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험물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별 정기점검의 대상설비,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의 점검을 수행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예시).

1. 제조소(00부서/000팀장)
2. 옥내저장소(00부서/000팀장)
3. 옥외저장소(00부서/000팀장)
4. 옥외탱크저장소(00부서/000팀장)
5. 암반탱크저장소(00부서/000팀장)
6. 이송취급소(00부서/000팀장)
7. 일반취급소(00부서/000팀장)
8. 소방시설(00부서/000팀장)

④ 정기점검 실시 전, 점검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7호 서식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계획”에 기재한다.

⑤ 정기점검 실시 전, 점검 대상 제조소등이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제7호 서식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계획”에 표시한다.

[제7호 서식]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계획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기 점검	□ 일반점검	점검시기	월 일		
		결과보고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처	소방서
		점검자	□ 자체 □ 외주	변경허가 대상	□ 해당
	□ 구조안전 점검	점검시기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 후 12년 □ 정밀검사 받은 후 11년 □ 정밀검사 받은 후 13년		
		결과보고	월 일		
		점검자	□ 자체 □ 외주	변경허가 대상	□ 해당
정기 검사	□ 정밀정기 검사	검사시기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 후 12년 □ 정밀검사 받은 후 11년		
		결과보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처	소방서
	□ 중간정기 검사	검사시기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 후 4년 □ 정밀중간검사 받은 후 4년		
		결과보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처	소방서
점검·검사 결과 보관방법	□ 예방규정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비고

- 안전관리대행기관(특정·준특정용외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제외)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 의뢰 가능
(단, 안전관리자는 점검현장에 참관해야 한다.)
- 정기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 서식 내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 정기점검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한다. (단, 구조안전점검의 경우 25년)

시 설 점 검 계 획(예시)

구 분	점 검 시 기	담당부서 및 점검처	비 고
작업환경 및 시설점검	매주 ○회	○○○감독자	별지 ○○서식
	매일 ○회	○○○부 ○○조장	별지 ○○서식
소방펌프 가동점검	매월 ○회	안전관리자, ○○○과	별지 ○○서식
일반점검	년 ○회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별지 ○○호] 서식
작동기능 점검	○○월	○○○관리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 의거
전기설비 절연측정	년 ○회	○○○과	별지 ○○서식
전기설비 접지저항측정	매 ○개월	○○○과	
전기설비 종합점검	년 ○회	○○○	전기안전공사 자체양식
전기 일상점검	매일 ○회	○○○담당자	별지 ○○서식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검사	매월 ○	○○○팀	별지 ○○서식
구조 및 누설시험	매 ○○년	○○○	소방공사 자체양식
부등침하 검사	년 ○회	○○○	검사업체 자체양식

- 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대한 사항을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에 기록한다.
-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 일체는 차기 정기검사 완료시점까지 보관한다.
-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최신화한다.

<작성요령>

- 위험물시설 등의 점검업무 운영 부서에 대하여 정의한다.
- 위험물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기술한다.
- 위험물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기술한다.
- 운영부서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점검 대상 및 담당 업무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24조 자체안전점검

제24조 자체안전점검

- ① 위험물법에서 규정하는 점검·검사 외 당해 사업장 내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비 등에 대하여 자체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실시한다.
- ② 자체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가동 전 점검: 위험물시설의 설비를 최초 가동하는 경우, 가동 전 0회 실시
 2. 변경 후 점검: 위험물시설의 설비를 분해, 개조 또는 수리한 경우, 변경 후 0회 실시
 3. 재가동 전 점검: 위험물시설의 설비를 1개월 이상 가동하지 않은 후 재가동하는 경우, 가동 전 0회 실시
- ③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제 8호 서식의 “위험물·소방시설 안전점검(정비) 계획”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1. 점검 대상 시설 및 범위
 2. 점검 일자 및 주기
 3. 점검자
 4. 점검(정비) 내용

제8호 서식 위험물·소방시설 안전점검(정비) 계획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안전 점검 (정 비)	점 검 자	안전관리자	점검주기	□ 매월 (일)						
	점검횟수	월/일 회 이상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구 분	점검(정비)내용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피난방화시 설)									
기타시설										
정비·보완 기록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전자문서			□ 별도 파일철 □ 기타()						

※ 비고

안전점검 수행자는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 안전순찰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수행할 수 있다.

④ 자체안전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주관하며, 점검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예시).

1. 최초 가동 전 점검

- 가. 설비의 설계 및 제작 사양 적합성
- 나. 안전장치 및 계측기 작동 상태
- 다. 운전 조건 및 제어 설정값 적정성
- 라. 시운전 및 이상 유무 확인

2. 변경 후 점검

- 가. 분해, 개조, 수리 부위의 건전성
- 나. 재조립 상태 및 체결부 이상 유무
- 다. 변경된 부품 및 재료의 적합성
- 라. 성능 시험 및 운전 상태 확인

3. 재가동 전 점검

- 가. 장기 미사용에 따른 부식 및 노후화
- 나. 윤활유 및 냉매 상태
- 다. 안전장치 작동 상태
- 라. 시운전 및 설비 상태 확인

⑤ 자체안전점검 결과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점검자는 점검 결과를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000부서 및 000에 보고한다.
3. 중대한 결함 또는 중요한 개선 필요 사항은 000 및 000에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한다.

<작성요령>

- 안전점검의 종류, 점검횟수, 보고체계, 관리 등에 대하여 정의한다.
- 안전점검 등의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점검 팀의 구성 및 점검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25조 점검결과 기록·유지 및 보고

제25조 점검결과 기록·유지 및 보고

- ① 정기점검 및 검사 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1.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 ② 점검에서 발견된 결함 및 개선 필요 사항은 즉시 보고하고 조치한 후, 조치 결과를 기록한다.
- ③ 점검에서 발견된 결함 및 개선 필요 사항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될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작성요령>

- 위험물시설 등의 점검결과 기록·유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 위험물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 보완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26조 시설의 정비

제26조 시설의 정비

- ① 시설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 허용범위를 벗어난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할 경우
 2. 제작사가 권고한 내구연한을 초과 사용한 설비 및 부품에 대하여 예방 차원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②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의 결함 등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담당 부서 및 전문가에 의뢰하고, 신속히 정비 및 보수 조치를 취한다.
- ③ 정비 및 보수 조치가 완료되면 담당자(000)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정비가 완료되어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비작업 절차서, 안전작업절차서 및 특수작업 절차서 등 안전지침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작성요령>

-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정비 계획 작성 및 정비 결과 작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정비 완료 후 해당시설 및 설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전지침 내 반영하고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는 등의 사항을 작성한다.

제7장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제27조 운전 및 조작

제27조 운전 및 조작

- ① 사업장 내 종사자는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수행한다.
- ② 000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의 사항을 반영한 운전 및 조작 절차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예시).
 1. 시운전 절차
 2. 정상운전 절차
 3. 비상운전 절차
 4. 정상 및 비상운전 정지
 5. 정비 후 운전개시
 6. 위험물 취급 및 조치 절차
 7. 소방시설 작동 절차
 8.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참고. 운전 및 조작 절차서(예시)>

1. 최초의 시운전 시
 - 1.1 압력 0.35MPa 스팀인입 배관의 차단 밸브를 서서히 열어 관련 배관 및 기기를 steam out 한후 밸브를 완전히 닫는다.
 - 1.2 Steam out 후 Utility station의 질소를 사용하여 60분간 관련 배관 및 기기를 Purge한다.
 - 1.3 휴대용 가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관련 배관 및 기기의 벤트밸브에서 벤트 되는 가스중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의 농도가 0.5%이하 인지 확인 한다. 만약 벤트 가스의 산소 농도가 0.5% 이하가 안 될 때에는 다시 20분간 질소로 Purge 한다.
 - 1.4 글리콜 서지 탱크의 Level 지시계를 보면서 글리콜을 투입하여 Level이 서지 탱크의 약 3/4이 되도록 한다.
 - 1.5 글리콜 순환 펌프(P-540/541) 토출측 배관의 차단밸브를 잠그고 Bypass밸브를 열린 후에 글리콜 순환 펌프를 가동하여 서서히 글리콜을 순환시키고, 서서히 스팀 인입 밸브를 열어 글리콜을 약 60°C까지 가열한다.
 - 1.6 글리콜 순환 펌프의 Bypass밸브를 서서히 닫고 토출측 배관의 차단 밸브를 서서히 열어 글리콜을 V-500에 공급한다.
 - 1.7 글리콜 스크라버, V-510을 거친 Sweet가스가 벤트될 수 있도록 벤트 밸브를

열고 주공급 배관의 차단밸브를 서서히 열어 Sweet가스를 주입한다.

1.8 현장 온도계 TG-5802를 보면서 글리콜의 온도가 100°C가 되도록 글리콜 리보일러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조절한다.

1.9 약 30분후 글리콜의 온도가 200°C가 되도록 다시 글리콜 리보일러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조절한다.

2. 정상운전 시

2.1 Sample 측정결과 건조된 가스의 수분이 0.1ppm이하 인지 확인한다.

2.2 건조된 가스의 수분이 0.1ppm이하 이면 Sale가스 헤더의 차단밸브를 열고 Flare stack 헤더의 벤트 밸브를 잠근다.

2.3 글리콜 공급 헤더의 카본 휠터(F-570)후단의 밸브를 열고 로타미터 전후단의 밸브(1 ")를 조절한다.

2.4 글리콜 공급 헤더의 2 " 밸브를 잠근다.

2.5 일일 3회 V-510 Outlet에서 가스를 Sampling하여 건조된 가스의 수분을 확인한다.

3. 비상시 운전

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글리콜 순환 펌프의 기계적 결함시에는 스팀 터빈으로 작동되는 글리콜 순환 펌프를 가동하여 운전한다.

4. 정상 및 비상운전 정지

정상시 또는 비상시 운전 정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Sweet가스 공급 헤더의 차단 밸브를 잠근다.

4.2 가스가 벤트되도록 벤트 밸브를 열고 Sale가스 헤더의 차단밸브를 잠근다.

5. 정비 후 운전 개시

정비후에는 회전기기 등의 Alignment상태를 확인하고 각 기기의 플렌지 연결 부위 등에서 누출이 없는지 누출 Test 후 시운전/정상운전 지침에 따라 운전한다.

6.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운전범위 이탈시 안전운전절차 지침에 따라 운전한다.

7.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본 공정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은 메탄가스와 테트라에틸렌 글리콜 2가지이다.

- 메탄

메탄은 공기보다 가벼운 무색의 가스로서 비중은 0.55(공기 : 1)이다. 메탄의 폭발한도는 5.0%, 상한은 15%로서 누출된 가스는 화재, 폭발을 일으킨다.

메탄가스는 독성은 없으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메탄에 질식된 경우에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환자를 옮기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TEG)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은 무색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182°C이다.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의 LD 50 은 28~34g/kg(경구, 쥐)이다. 만일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였을 때에는 물로 씻고, 많은 양을 삼켰을 때에는 토하게한 후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위험물 누출예방 조치

본 설비가 정상 운전되는 경우에는 메탄이나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의 누출은 없다. 그러나 화재시 등과 같은 비상시에는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메탄 이나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이 방출되는데 이는 모두 플레아 스택으로 처리된다.

또한 설비 또는 배관의 부식 및 기기의 결함에 의해 메탄가스나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이 누출될 수 있으므로 본 공장의 운전 공무반원이 공장 Shut down시 정기적으로 용기 및 배관의 두께를 측정 관리하고 있다.

9. 개인 보호구

본 가스처리 설비에는 독성물질을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정기 보수시 질식에 의한 사고와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의 피부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어실내에 보호안경(10개), 보호마스크(10개), 고무장갑(10set) 및 산소호흡기(1set)를 갖추고 있다.

10. 위험 물질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 메탄가스 :

메탄가스는 독성은 없으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메탄에 질식된 경우에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 :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였을 때에는 물로 씻고, 많은 양을 삼켰을 때에는 토하게 한 후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안전 설비 계통의 기능 운전 방법 및 절차

글리콜 스크라바, V-510 :

- 압력 V-510압력 상승시에는 V-530의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SV-5301이 작동하여 관련 용기 및 배관을 보호한다.

- LEVEL V-510의 액면은 Level Control밸브, LCV-5101에 의하여 조절되며, Level Control밸브의 고장 등으로 액면이 조절되지 않아 액면이 상승할 때에는 액면 경보장치가 울리며 용기 내부에는 데미스터를 설치하여 메탄가스에 Entrain되는 테트라 에틸렌 글리콜을 잡아 주어 기존 Sale가스 컴프레서를 보호한다.

- 압력 V-520의 압력은 압력 조절 밸브, PCV-5201에 의해 0.4MPa로 유지된다. 그러나 압력 조절밸브의 고장 또는 주변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V-520의 압력이 상승할 때에는 안전밸브, SV-5201이 작동하여 2차적으로 용기를 보호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신규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 및 조작 절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작성요령>

- 위험물시설 등의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운전, 정지 등 운전 세부 절차를 기술한다.
- 운전 및 조작 절차서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종사자를 교육한다는 내용을 작성한다.

제28조 운전 절차의 준수

제28조 운전 및 조작 지침의 준수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는 위험물시설 및 설비의 운전 및 조작 시 해당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작성요령>

- 안전 및 조작의 절차 준수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운전 수행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8장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29조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

제29조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

- ① 종사자는 위험물 취급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1. 각 위험물 취급장소에는 허가를 받은 수량 이상 저장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2. 위험물 취급장소에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3. 위험물 취급장소에는 직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4. 위험물의 찌꺼기는 1일 이회 이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수시로 청소한다.
 5.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고 관리·점검한다.
 6. 위험물 취급장소에는 가연성가스의 체류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7.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는 함부로 넘어뜨리는 행위 등 충격을 방지한다.
 8. 가연성가스가 새는 장소이거나 고압 장소에서는 불꽃을 발하는 기계, 공구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
 9. 위험물을 옥내에 저장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0.5m 이상 품명별 0.5m, 반자로부터 3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10. 위험물 저장하는 장소에는 지정수량 10배마다 0.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11. 옥외탱크의 방유제에는 그 배수구를 폐쇄하여 두고 그 방유제 내부에 고여 있는 위험물은 즉시 배출하여야 한다.
 12. 위험물을 옥외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품명별 0.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고 용기를 쌓아 놓을 때에는 3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3.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원동기 등에 주유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 후 주입한다.
 14. 유분리장치 내에 고인 유류는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퍼내어야 한다.
 15. 기타 안전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 ② 종사자는 위험물 취급 시 다음 각 호의 위험물 류(類)별 취급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1. 공통특성

- 가.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 나. 일반적으로 불연성물질이다.
- 다. 일반적으로 가열등에 의하여 분해하여 함유하고 있는 산소를 발생한다(산소공급원)
- 라. 일반적으로 가연물, 유기물, 그 밖의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의 혼합물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물과 작용하여 열과 산소를 발

생시키는 것도 있다.

2. 저장 및 취급

가. 조해성이 있으므로 습기에 주의하며 용기는 밀폐하여 저장한다.

나. 환기가 양호한 냉암소에 저장한다.

다. 환원제, 산 또는 화기와 가열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한다.

라. 용기는 밀봉하고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3. 소화방법

가. 제1류 위험물은 분해하면서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소가 급격하고 위험물 자체의 분해도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대량의 물로 냉각하여 분해온도 이하로 내림으로써 위험물의 분해와 가연물의 연소 속도를 억제할 수 있다.

나.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에 관련된 화재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탄산수소염류 등을 사용한 분말소화기, 마른모래 등을 이용하여 질식소화 한다.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

1. 공통특성

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이연성(易燃性), 속연성(速燃性) 물질이고 유독성인 것. 또는 연소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이 있다.

나.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다.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라. 일반적으로 산화제와의 혼합시 충격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이 있다.

2. 저장 및 취급

가.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한다.

나. 용기의 파손으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다.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라. 금속분은 산 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마. 저온의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3. 소화방법

가. 일반적으로 물, 거품, 건조제 등으로 소화한다.

나. 주수에 의하여 발연하는 것(황화린)은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하거나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제를 이용한다.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공통특성

가. 공기중에 노출되거나 물(수분)과 접촉하는 경우 직접적인 발화위험이 있다.

나. 황린과 같이 자연발화성(공기중 발화 위험성)만을 가지고 있는 물품, 알칼리금속

과 같이 금수성(물과 접촉시 발화하거나 가연성 또는 유독성의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만을 가진 물품도 있지만,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의 위험성을 모두 갖는 물질이 많다.

2. 저장 및 취급

가. 금수성물질은 용기의 파손과 부식을 막고 수분의 접촉을 방지한다.

나. 물과 접촉하여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므로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다. 보호액속에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라. 다량을 저장할 경우는 소분하여 차가운 곳에 저장한다.

마. 자연발화성물품은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황린은 물속에 저장)

3. 소화방법

가. 금수성물질의 소화에는 탄산수소염류 등을 이용한 분말소화약제 등 금수성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분말소화 약제를 이용한다.

나. 자연발화성만 가진 위험물(황린)의 소화에는 물 또는 강화액 포와 같은 물계통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마른모래, 팽창질석과, 진주암은 제3류 위험물 전체의 소화에 사용할 수 있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1. 공통특성

가. 화기 등에 의한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크다.

나. 액비중은 1보다 작음(물보다 가벼운) 것이 많다.

다. 물에는 녹지 않는 것이 많다.

라. 증기비중은 1보다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하고 낮게 멀리 이동한다.

마. 일반적으로 전기의 부도체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고 정전기의 방전불꽃에 의하여 인화하는 것도 있다.

바. 액체는 유동성이 있고 화재의 확대위험이 있다.

2. 저장 및 취급

가. 저장 취급시 인화점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 취급하여야 한다.

라. 화기나 점화원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저장 취급하여야 한다.

마.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고 정전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시냇물, 하수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소화방법

가. 포(거품), 이산화탄소, 할로겐화물, 분말, 무상의 강화액 등으로 소화한다. 비중이 1보다 작은 위험물의 화재에 주수하면 위험물이 부유하여 화재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에 의한 소화는 적당하지 않다.

나. 주수소화는 할 수 없으나 무상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 수용성의 위험물화재에는 수용성이 아닌 특수한 내알코올포(수용성 위험물용 포 소화약제)를 사용한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

1. 공통특성

- 가. 고체 또는 액체로 비중이 1보다 크며 연소하기 쉬운 물질이다
- 나.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연소성이 있는 것이 많다.
- 다.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발화하고 폭발하는 것이 많다.

2. 저장 및 취급

- 가. 점화원, 열기 및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로부터 멀리한다.
- 나. 용기의 파손 및 균열방지와 함께 실온, 습기, 통풍에 주의한다.
- 다.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하므로 소분하여 저장한다.
- 라. 다른 위험물과 같은 장소에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 마. 눈이나 피부에 접촉시 비누액 또는 다량의 물로 씻는다.
- 바. 유기과산화물이 새거나 오염한 것 또는 낡은 것은 질석이나 진주암 같은 불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 또는 혼합해서 제거 한다. 유기과산화물을 흡수한 흡수제를 모을 경우에 강철제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소화방법

- 가. 일반적으로 다량의 물이 가장 효과적이고 포(거품)도 사용할 수 있다.
- 나.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1. 공통특성

- 가. 모두 불연성이나 산화성이 강하다.
- 나.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
- 다. 부식성이 있고 피부를 손상시키며, 증기는 유해하다.

2. 저장 및 취급

- 가. 물, 가연물, 유기물, 고체의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 나. 저장용기는 내산성인 것이어야 한다.
- 다. 용기를 밀봉하고, 파손으로 위험물이 새나오지 않도록 한다.
- 라. 만일의 경우 피부에 닿으면 즉시 세척하여야 한다.
- 마. 화기, 직사광선은 피하여 저장한다.

3. 소화방법

- 가. 연소물에 대응한 소화법으로 소화하고 2차 재해의 방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상황에 따라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만 위험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유출사고시에는 마른모래를 뿌리거나 중화제로 중화한다.
- 라. 재해현장 위쪽에 위치하고 발생하는 가스에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③ 종사자는 위험물을 취급할 때마다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한다.
-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위험물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도록 한다.

<작성요령>

- 사업소 특성에 맞는 위험물 취급시의 매뉴얼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 위험물 취급일지 작성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30조 위험물 취급작업 안전절차

제30조 위험물 취급 시 작업 안전절차

① ○○시설에서 수행되는 위험물취급 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절차, 예상되는 위험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한다.(예시)

1. 위험물제조소

가. 작업순서

- (1)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 확인(안전밸브 작동 상태, 접지 상태 등)
- (2) 밸브 개폐 및 펌프 가동을 통한 위험물 제조
- (3) 제조 완료 후 밸브 잠금 및 배관 내 잔류물 제거
- (4) 사용한 기구 및 보호구 정리정돈 및 청소

나. 예상되는 위험

- (1) 위험물 누출에 의한 화재 및 폭발
- (2)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넘어짐 사고

다. 유의사항

- (1) 작업 중 흡연 및 화기 사용 엄금
- (2)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 (3) 작업 절차 준수 및 임의조작 금지
- (4) 위험물 취급량 제한 및 원료 주입 공급량 주의

2. 옥외탱크저장소

가. 작업순서

- (1) 작업 전 탱크 액면 및 온도, 압력 확인
- (2) 안전한 속도로 내용물 충전
- (3) 작업 종료 후 밸브 잠금 및 설비 상태 점검
- (4) 작업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

나. 예상되는 위험

- (1) 탱크 과충전으로 인한 위험물 넘침
- (2) 탱크 균열 및 누설에 의한 대량 누출
- (3) 누출 시 위험물 증기에 의한 인화 및 폭발

다. 유의사항

- (1) 지정된 충전속도 준수
 - (2)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한 접지 확인
 - (3) 필요 시 냉각수 순환 등으로 온도 관리
 - (4) 야간작업 시 적정 조도 확보 및 안전조치 강화
- ②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작성요령>

- 각 시설 및 공정 별 작업순서, 예상되는 위험, 유의사항 등을 작성한다.

제31조 화기 작업

제31조 화기작업

- ①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와 그 설비의 인근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한다.
 - 1. 화기차단막 또는 불꽃 방지망 설치
 - 2. 가연성 가스 농도 측정기 구비
 - 3.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 4. 소화기 및 소화포 구비
 - 5. 0000
 - 6. 000
- ② 작업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 별지 제8호 서식의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000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③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작업 전 및 작업 후 점검을 실시한다.
- ④ 화기작업 전·후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의 격리·제거 상태
 - 2. 작업장 내 가스농도 및 환기 상태
 - 3. 화기 안전시설 및 소화기구 비치·작동 상태
 - 4. 작업자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 5. 화기사용 장비 이상 유무 및 접지 상태
 - 6. 비산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 여부
 - 7. 작업 후 잔불, 뜨거운 재 등의 잔존 여부
- ⑤ 화기작업을 위한 안전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작업구역 설정 및 통행·출입 제한

2. 가연성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3. 불꽃 발생 장비·차량의 작업구역 출입 통제
4. 밸브차단 및 맹판설치 표시판 부착
5. 배관·용기 내 위험물질 완전 방출 및 세정 후 가스농도·잔류물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 강제환기 등으로 공기 치환
7. 용접불티 비산 방지 차단막 등의 설치 및 개구부 밀폐
8. 작업 입회자의 작업 전·중 안전상태 확인 및 주기적 가스·분진농도 측정
9. 화재진압용 소화기 비치 및 소화전·소방차 대기

<작성요령>

- 화기작업 또는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시설, 소화기구 등의 비치에 대하여 기술한다.
- 화기작업 또는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의 점검횟수 등을 기술한다.
- 화기작업 등의 주요 점검 항목 등을 기술한다.

제32조 기타 안전수칙

제32조 기타 안전수칙

- ① 사업장 내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업장 인근, 사무실 및 000에 비치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예방규정
 3. 위험물 분류 별 화재 특성 및 소화 방법
 4. 비상연락체계(비상연락망, 연락 및 대응방법 등)
 5. 비상대피장소 안내도
 6. 000

<작성요령>

- 안전관련 문서를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 위험물질의 누출 및 화재특징, 소화방법 등의 참고자료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기타 위험물 취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9장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 이송취급소의 공사 관리

제33조 이송취급소의 공사 관리

① 이송취급소 배관공사시 현장 책임자는 0년간 배관 공사를 수행하고 숙련된 자로 00팀장 또는 00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인 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사 현장 책임자 : 000
2. 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 000

② 이송취급소 배관주위에 있는 시설 외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1. 배관 주위에 경계구역(웬스 등) 설치
2. 배관주위에 위험표지 설치

③ 000는 현장 작업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방화/안전 위해 위험 소지를 사전에 제거 한다.

④ 공사현장 책임자는 해당 작업장의 방화, 위험물 관리를 위해 정리정돈, 위험물 방치 유무, 잠재 화재요인의 제거에 만전을 기한다.

⑤ 배관설치작업은 사내 작업허가절차에 의하여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작성요령>

- 이송취급소 공사현장의 책임자 지정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이송취급소의 순회점검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 이송취급소의 공사 감독 및 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34조 이송취급소의 안전 관리

제34조 이송취급소의 안전 관리

- ① 0000는 이송취급소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장비 등을 활용하여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15(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이동하면서 점검하는 순회점검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점검을 실시한 후 각각의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 ② 순회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대상은 이송취급소 배관(사용자공급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사현장으로 한다.
 2.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공사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의 누출여부
 - 나. 배관이 매설된 지면 상부의 지반침하 여부
 - 다. 작업자에 대한 법적절차 준수여부 확인
 - 라. 무단 굴착공사 확인 및 발견시 후속조치 등
 3. 순회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순찰일지”에 기록한다.
- ③ 이송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예시).
 1. 위험물의 이송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그에 부속한 설비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위험물의 이송취급을 하는 이송 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개시할 것
 2.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
 3.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의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소방청이 정하여 바에 따라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④ 이송취급소 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화기사용과 흡연을 금한다.

<작성요령>

- 이송취급소의 작업장 내의 안전관리(흡연, 누출방지, 화재대응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이송취급소 작업의 안전관리계획 및 순찰횟수, 순찰경로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제35조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

제35조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

- ① 000은 사고 대응에 필요한 방재장비·물품 및 개인보호장구 등의 방재물품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 ② 000은 방재장비·물품 및 개인보호장구 현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제9호 서식의 “방재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③ 000은 방재장비·물품 및 개인보호장구의 배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도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최신화 한다.

[제9호 서식] 방재물품 관리대장

명칭	용도	설치/ 보관위치	수량	성능/ 규격	점검주기/ 유효기간
흡착포	액체 유해 화학물질 누출 시 흡착	위험물 저장소 옆	000매	폴리프로필렌, 50cm x 50cm	0년
방독면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 보호	중앙 제어실	00개	전면형, 유기화합물용 여과통	여과통 교체 시기에 따름
화학방호복	피부 보호	안전장비 보관함	0벌	부틸고무, Level A	0년
방화포	유출시 확산 방지	위험물 저장소 앞	00포대	모래, 25kg/포대	-
방유벽	누출된 액체 유해물질 확산 방지	저장탱크 주변	0개	염화비닐, 20m	0년
소화기	초기 화재 진압	건물 각 층	00개	분말소화기, 4.5kg	0년

<작성요령>

- 방재물품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 방재물품 관리대장 작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필요 시)방재물품의 배치도면을 기재한다.

제10장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제36조 비상연락체계

제36조 비상연락체계

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1. 주·야간/공휴일을 구분한 사업장 내·외부 사고 신고체계
2. 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락처
3.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등) 연락처
4. 인근 사업장 연락처



<비상연락체계 예시>

- ② 신속·정확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고, 가동점검 및 훈련을 실시한다.
- ③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제10호 서식의 “비상대응 계획”에 초기 대응에 대한 사항과 비상연락의 세부적인 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다.
- ④ 비상연락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0회 이상 가동점검 및 훈련을 실시한다.

[제10호 서식] 비상대응 계획

1. 초기대응

초기대응절차 비상상황 전파 및 신고(1순위) → 초기소화(2순위) → 피난(유도)(3순위)

비상상황
전파 및 신고

초기소화		
피난유도		
2. 비상연락		
연락대상	연락방법	내 용
자체소방대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SMS문자	
	<input type="checkbox"/> 자체 App 활용	
근무·거주·방문 자	<input type="checkbox"/> 비상방송설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계기관	<input type="checkbox"/>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유도	경로	
	방법	
집결지	장소	
	확인사항	

<작성요령>

- 비상연락체계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비상연락체계의 최신화 의무를 기재한다.
- 비상상황 시 초기대응 절차 및 비상연락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 비상연락체계의 가동점검 및 훈련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37조 비상대응조직

제37조 비상대응조직

- ① 비상대응조직은 사고 발생시 실제로 투입 가능한 조직, 각 임무에 맞게 훈련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직 및 공조활동을 필요로 하는 외부기관 목록을 포함한다.
- ② 비상대응조직은 각 반별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 ③ 비상대응조직은 자체소방대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작성요령>

- 비상대응조직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비상대응조직의 각 반별 임무 및 인원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38조 비상 대응 매뉴얼(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제38조 비상 대응 매뉴얼(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 ① 000은 공정이상, 화재 및 누출 등 상황별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종사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 ② 비상대응 매뉴얼은 사고유형, 대응요령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사고 상황별 대응요령은(별첨00)에 따라 조치한다.

[별첨 00] 사고 상황별 대응요령(예시)

가. 저장탱크 등에서 사고발생시

1) 사고유형

- 저장탱크 몸체(연결부 포함)에서 누출.화재.폭발
- 저장탱크와 연결배관 또는 밸브 등에서 누출.화재.폭발

2) 대응요령

- 탱크주위의 화기와 일반 전기설비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및 출입 통제
- 통풍이 원활하게 하여 누출되는 유체가 자연확산 되도록 함.
- 긴급차단 밸브 작동
- 국소배기장치 활용이 가능한 경우 누출 체류된 유체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
- 누출되는 부위가 비교적 작고 누출량이 적은 경우
 - 나무마개, 납마개, 금속에폭시, 고무밴드 등으로 조치
- 누출된 유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위험물 류별 취급기준에 명시된 소화방법으로 소화
- 공급 재개전 공급중단 시설 및 배관에 대한 안전점검

3) 유관기관 지원요청

유관기관	지원요청 내용
00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검사장비 협조요청 ○ 누출검지기 및 산소농도측정기 이용 유체 농도측정 ○ 누출량과 주변상황 상태에 따른 조치사항 기술지원 ○ 2차 사고예방을 위한 당해시설물 및 주변 안전(정밀)점검 실시
저장탱크 전문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출되는 부위가 비교적 크고 누출량이 많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체탄산을 이용하여 누출부위를 동결시켜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 저장탱크내 내용물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른 저장탱크나 탱크(벌크)로리 등으로 이송조치 ○ 탱크로리 용량에 맞는 크레인 확보 및 조치 ○ 내용물 회수 탱크로리(벌크로리) 확보 후 안전조치 ○ 내용물 이송조치후 탱크내 질소 및 공기치환
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탱크 전체에 살수하면서 탱크를 냉각 ○ 누출량과 주변상황 및 저장탱크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화재의

	<p>진압여부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의 국부과열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표면에 골고루 살수 냉각 - 누출부위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불을 끄지 않도록 한다. (소화할 경우 누출되는 가스에 의해 2차 폭발의 우려가 있음) ○ 화재폭발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주위 가옥.시설물 등에 살수 실시 ○ 누출.질식.화재.폭발 등에 의한 인명 구조
경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폭발등을 고려하여 주민 등 대피조치 ○ 인근 차량 및 주민 통제

<작성요령>

- 각 사고상황 별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한다.
- 각 사고상황 별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39조 비상대응 훈련

제39조 비상대응 훈련

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0회 이상 정기적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1. 위험물 누출사고 대응 훈련
2. 화재·폭발 사고 대응 훈련
3.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 대응 훈련
4. 응급의료 및 구호 훈련

②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0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한다.

1. 각 부서 및 공정별 대피 경로 및 절차
2. 대피 과정에서의 역할과 임무
3. 대피 완료 후 인원 점검 및 상황 보고 체계

③ 비상 대피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관리한다.

1. 근로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2. 사업장의 위험 지역으로부터 안전한 거리 유지
3. 연락 및 확인이 용이한 접근성 확보
4. 식수, 생필품 등 비상 물자의 비축 및 관리

⑤ 매 훈련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1. 훈련 상황 개요(일시, 장소, 참여 인원 등)
2. 훈련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

⑥ 비상대응훈련은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작성요령>

- 각 사고상황 별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한다.
- 비상대피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 비상대피장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 훈련 평가 및 강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40조 피난 계획 수립

제40조 피난 계획 수립

- ① 000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 ② [별첨 2] 피난 계획도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장 내 건물의 층별로 피난 계획도를 작성하고 종사자에게 교육한 후, 피난 계획도를 각 층별 출입구 등 종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 ③ 000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④ 피난계획 수립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 소통·이동이 어려운 사람(재해약자)의 현황
 4. 각 건물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⑤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연 2회 피난대피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출입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방송을 제공하는 방법

<작성요령>

- 피난 계획도의 작성, 작업자 교육 및 사업장 비치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재해약자 피난, 피난 경보 등)을 참고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 피난유도의 안내방법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종사자들이 피난유도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1조 비상설비 관리 및 운전

제41조 비상설비 관리 및 운전

① 000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하고, 제11호 서식의 “비상설비관리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한다.

[제11호 서식] 비상설비관리대장

비상설비명	보유 개수	점검 주기	점검요소	관련법령 또는 표준	점검부서
비상발전기	00	분기 ○회	- 외관 점검 및 작동 테스트 - 연료, 오일, 배터리 점검 및 교체	비상발전기 자체점검 SOP (EQUMSEG-003)	전기담당
소방펌프	00	년 ○회	- 외관 점검 및 작동 테스트 - 성능 점검 및 세부 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부서
통신장비	00	월 ○회	- 외관 점검 및 작동 테스트 - 배터리 점검 및 교체	-	안전관리부서, 총무부서(보수담당)
화재감지기	00	년 ○회	- 외관 점검 및 작동 테스트 - 감지기 청소 및 회로 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부서
가스감지기	00	반기 ○회	- 외관 점검 및 작동 테스트 - 센서 상태확인	가스검지기 유지관리표준 (EQUUMMIA-001)	계기담당
AED(자동제세동기)	00	월 ○회	- 외관 점검 및 자가 테스트 - 배터리 및 패드 점검, 교체	자동심장 제세동기 관리 표준 (B07SG-022)	설치 부서
공기호흡기	00	월 ○회	- 면체 및 필터 점검, 교체 - 부속품 상태 확인	공급호흡기 사용표준 (B07SU-051)	설치 부서
00형식 보호복	00	월 ○회	- 밀봉 상태 및 부속품 점검 - 클리닝 및 보관 상태 점검	-	설치 부서

② 000은 비상설비의 운전 및 조작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반기 0 회 이상 실시한다.

③ 비상상황 발생 시 단위 공장 또는 공정 단위로 가동중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규정한다.

1. 가동중지의 권한자: 00/000
2. 가동중지의 범위
 - 가. 펌프 후단 ~ 압축기 전단
 - 나. 000
 - 다. 0000
3. 가동중지의 절차:
 - 가. 사고 인지 및 상황 파악
 - 나. 가동중지 결정
 - 다. 사업장 내 경보 발령

라. 가동중지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④ 비상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 경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존한다.

<작성요령>

- 비상설비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 비상설비의 운전절차를 수립하고 종사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 비상상황에서의 가동중지 절차 권한자 및 절차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11장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제42조 위험물 안전관리 기록

제42조 위험물 안전관리 기록

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안전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1. 소방장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3년
2.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2년
3.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1년
4. 위험물시설·소방시설 등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년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 2년
6.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에 관한 사항: 3년
7.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에 관한 사항: 5년

② 위험물 취급 및 순찰에 대한 기록은 예방규정 내 첨부하거나 전자문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을 제12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2호 서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

변경일자	시설 구분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비고
2023.05.01	제조소	위치	Unit #1	Unit #1 Unit #3	위험물 제조소 확장	신규 부지 확보 및 공장 증설
2023.06.15	제조소	구조	-	OO시설 2층 격벽 제거	위험물 취급량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확보	-
2023.07.10	제조소	설비	OO 펌프 A	OO 펌프 B	노후 설비 교체	-
2023.08.01	옥외탱크 저장소	물질	제1석유류	제1석유류 , 제2석유류	취급 위험물 종류 확대	-
2023.09.20	옥내탱크 저장소	지정수량 (배수)	10,000 L (3,000배)	20,000 L (6,000배)	위험물 취급량 증가에 따른 조정	관할 소방서 신고 및 승인 완료

<작성요령>

- 예방규정에 따른 다양한 기록에 대한 보존사항을 작성한다.
- 제조소등의 변경이력을 작성한다.

제12장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제43조 서류 및 도면의 정비

제43조 서류 및 도면의 정비

① 000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현장 배치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첨 1] “서류 및 도면“에 첨부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의 현장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위성사진(네이버, 다음, 구글지도 등)을 첨부한다.
2. 여러 동의 제조소등이 설치되었을 경우, 설치허가번호를 기입하되 자체 공장에서 명명하는 동 이름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옥내저장소의 경우 "[옥내저장소 제 21-1111-111111호(가동)]"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3. 현장 배치도는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위에 주요구조물(관공서, 랜드마크 등)이 지도에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000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도면 및 소방설비의 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첨 1] “서류 및 도면“에 첨부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의 도면 및 소방설비의 도면을 사업장 전체 배치도(Layout 도면),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다양한 형태로 첨부한다.

2. 도면은 A4크기로 첨부하거나 PDF 또는 CAD 파일의 출력 등의 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다.

③ 000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현장 사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첨 1] “서류 및 도면“에 첨부한다.

1. 해당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사진을 최신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전면, 후면, 측면, 내부 등 가능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사진으로만 현장이나 시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진에는 시설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4.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로드뷰 등)의 첨부는 금지한다.

④ 000은 위험물 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별첨 1] “서류 및 도면“에 첨부한다.

⑤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장과 일치하도록 00부서가 주관하여 즉시 관련서류 및 도면을 보완하여 최신자료로 유지 관리 한다.

⑥ 신규설비 및 시설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00부서에서 관련서류 및 도면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작성요령>

- 위험물시설의 허가서류 및 관련도면(PLOT PLAN, PFD, P&ID 등)에 대한 작성 방법 및 보관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변경사항에 대한 도면 반영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 PLOT PLAN, PFD, P&ID 등은 별도의 서류로 관리 가능

제13장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제44조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 ① 위험물시설의 허가용도 이외의 사용을 절대 금한다.
- ② 위험물시설의 신·증설 및 개·보수 시에는 변경허가서 및 관련 자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정별로 작성하며, ○○팀장에게 제출하여 -----
- ③ 최종 확정된 상기 자료(허가서)는 사본 1부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고, ○○팀장에게 ----

<작성요령>

-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45조 소방시설 유지관리

제45조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①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자체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한 규칙에 적합 하도록 점검 및 유지·관리 -----
- ② 모든 소방시설은 화재나 소방훈련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소방설비의 신·증설 및 개·보수시(단, 시설에 해당)에는 시설공사 이전에 소방시설 공사업 법 및 -----

<작성요령>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14장 부 칙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작성요령>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규정의 적용 및 기타 안전관리 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00월 부터 시행한다.

화학소방자동차 정기 점검일지

소속		차량번호	
		소방장비 관리자	

□ 점검결과

점검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교대 점검	외관	상징물·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누수· 누기	오일 및 냉각수	바닥 누유·누수 흔적	유[O]무[X]	
		압축공기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kg/cm ²	
	시동	시동	시동	가[O]부[X]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제동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O]무[X]	
		주차 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출발 시 밀림	유[O]무[X]	
	통신	무전기	교신상태	가[O]부[X]	
		블랙박스·후방·입체시계장치	작동상태	가[O]부[X]	
		영상전송장치	작동상태	가[O]부[X]	
	물·폼탱크	수량계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ℓ	
액량계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ℓ		
일일 점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변형 및 마모상태	유[O]무[X]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O]부[X]	
	배터리	배선체결	단자·배선 체결	적[O]부[X]	
	장치성능	경광등·등화장치	손상·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제어성	적[O]부[X]	
	펌프성능	펌프 동력인출장치	작동상태	가[O]부[X]	
		주펌프	방수압력 0.7Mpa에서 엔진 회전수 원위치 후 1분 뒤 압력감소 확인(0.1Mpa 미만)	Mpa	
	배관	배관	누수(기밀성)	유[O]무[X]	
		배수밸브	동력인출장치 해제 시 자동 개방 또는 수동개방 가능 여부	가[O]부[X]	
		방수구	조작손잡이 개폐	가[O]부[X]	
에어	에어밸브	작동상태	가[O]부[X]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 관리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작성일자 :

작성자 :

설치장소	상호(명칭)	제조소등 구분			
	소재지	(전화 :)			
	구조				
관계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대리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대리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대리자	

훈련 결과

일시/장소				
훈련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훈련	<input type="checkbox"/> 합동훈련		
참석결과	훈련·교육 교관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훈련보조재료				
훈련내용	()훈련	()훈련	()훈련	
훈련성과				
문제점				
개선계획				

교육 결과

일시/장소				
교육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교육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교육			
참석결과	교육강사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교육내용				
교육성과				
문제점				
개선계획				

교육·훈련 관련사진

소방훈련	소방훈련
안전교육	안전교육

□ 교육·훈련 참석확인

연번	직책	성명	확인	연번	직책	성명	확인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안전순찰일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순찰일시						순찰자	(서명)	
순찰대상	<input type="checkbox"/> 시설명							
	<input type="checkbox"/> 순찰코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기타()	
항 목	확인내용					확인결과	조치사항	
위험물시설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화기취급감독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이상·불량사항 개선보고	보고일시	보고방법				보고받은 사람		
		<input type="checkbox"/> 대면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				
	조치방법	<input type="checkbox"/> 이전	<input type="checkbox"/> 제거	<input type="checkbox"/> 수리·교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고

1.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안전순찰을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일 1회 이상 작성
2. 위험물 순찰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3. 유해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4. 안전순찰일지는 작성·보고 후 1년간 보관

점검기록부

1. 공정관리

관리항목	운전조건/작업상황	이상유무	담당자

2.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기록	
		좋음	나쁨

※ 비고

- 위험물시설의 공정별로 운전조건 및 작업상황, 이상조건을 작성한다.
- 위험물 시설, 운전 및 절차에 따라 필요시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7호 서식

위험물 취급일지

위험물 취급일지

점검자	확인자

20 년 월 일

확인일자 :

① 위험물 시설현황

설치장소		안전관리자	
제조소등 구분		허가번호	
최대 취급·저장량		시설 명칭	

② 위험물 취급현황

취급·저장 일자	유 별	품 명	물질명	종전 재고량	금일 입고량	금일 사용량	금일 재고량

③ 점검사항

(양호 : ○, 불량 : ×, 요정비 :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종사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수칙 교육 여부 			
위험물 취급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 취급 시 입회 여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 작업지시 및 감독 			
응급조치 및 연락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등 비상시 응급조치 소방관서 및 유관기관 등 연락업무 			
시설의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의 건전성 불필요한 가연물방지 등 위험요소 제한 여부 계측장치, 제어장치, 안전장치 등의 적절한 유지관리 			
부산물 및 폐기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관 장소 내 가연물 제거 여부 보관 용기 파손/부식/균열 확인 폐기물 처리 설비 등의 누출여부 확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화환경표시(주의, 경고, 금연표시) 외인 출입통제의 적절성 			
※ 특이사항(공사정비 사항 등)				

비고.

- 1) 위험물 취급일지는 이력관리가 용이하고 출력이 가능한 경우 전산으로 보관 가능
- 2) 본 위험물 취급일지 서식은 예시이며, 사업장 자체 서식으로 대체 가능

화기작업허가서

신청자	확인자

허가일자 :

신청인 :	부서 _____	직책 _____	성명 _____(서명)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지역(장소) :		설비(기기)명 :					
첨부서류	■ 작업계획서 <input type="checkbox"/>	■ 소방장비 목록 <input type="checkbox"/>	■ 화기작업절차서 <input type="checkbox"/>					
	■ 기술자료(도면) <input type="checkbox"/>	■ 보호장구 목록 <input type="checkbox"/>	■ 비상조치매뉴얼 <input type="checkbox"/>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 * 확인완료 후 √ 표시								
■ 작업구역설정(출입경고 표지) <input type="checkbox"/>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input type="checkbox"/>	■ 조명장비 상태 <input type="checkbox"/>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input type="checkbox"/>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input type="checkbox"/>	■ 소방장비 상태 <input type="checkbox"/>						
■ 가스농도측정 <input type="checkbox"/>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input type="checkbox"/>	■ 보호장구 상태 <input type="checkbox"/>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input type="checkbox"/>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input type="checkbox"/>	■ 안전교육 <input type="checkbox"/>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input type="checkbox"/>	■ 환기장비 상태 <input type="checkbox"/>	■ 위험물안전관리자 입회 <input type="checkbox"/>						
■ 잔여 위험물 방출 및 처리 <input type="checkbox"/>								
보충작업여부 * 해당사항 및 확인완료 여부 √ 표시								
밀폐공간 <input type="checkbox"/>	■ 통신수단 <input type="checkbox"/>	■ 보호장구(줄, 송기마스크 등) <input type="checkbox"/>						
고소 <input type="checkbox"/>	■ 작업발판, 안전난간 <input type="checkbox"/>	■ 안전대 착용·부착 <input type="checkbox"/>	■ 추락방지망 <input type="checkbox"/>					
중장비 <input type="checkbox"/>	■ 투입장비(_____) <input type="checkbox"/>	■ 자격증 소지 <input type="checkbox"/>	■ 기상, 노면상태 <input type="checkbox"/>					
	■ 전선, 설비 간섭 <input type="checkbox"/>	■ 신호수배치 <input type="checkbox"/>	■ 매트 등 부속장구 <input type="checkbox"/>					
화기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구분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
*가스농도 측정 기준 1. 인화성가스(HC) : 25% LEL 2. 산소(O ₂) : 18% 이상 ~ 23.5 미만 3. 탄산가스(CO ₂) : 1.5% 미만 4. 일산화탄소(CO) : 30ppm 미만 5. 황화수소(H ₂ S) : 10ppm 미만								
안전조치 및 복원상태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 : _____(서명)			작업(공무)부서 책임자 : _____(서명)			

[별첨 1] 서류 및 도면

1-1. 위험물 허가현황

위험물 허가 현황

옥외탱크저장소														
NO.	구분	DIKE NO	방유세 면적 (㎡)	허가번호	ITEM NO.	NO.	허가용량 (㎥)	지점수량(개)	배수	완공일자	최근 중간점검일자	차기 중간점검		
1	01			22 679		MF A 52 21	7,000.00	200	35,000.00	88.11.26.	/	2025.1		
2				22 680		MF A 52 22	7,000.00	200	35,000.00	88.11.26.	2021.11.01	차기 점검경기		
3				22 681		MF A 52 23	7,000.00	200	35,000.00	88.11.26.	2022.04.04	2026.C		
4				22 682		MF A 52 51	11,700.00	1,000	11,700.00	88.11.26.	/	2024.1		
5				22 683		MF A 52 52	11,700.00	1,000	11,700.00	88.11.26.	/	2025.C		
6				22 684		MF A 52 53	11,700.00	1,000	11,700.00	88.11.26.	/	2023.1		
7				22 569		MF A 52 90	7,000.00	8,000	1,166.67	05.03.15	/	2023.1		
8	01			22 685		MF A 52 74	11,700.00	6,000	1,950.00	88.11.26.	/	2024.C		
9				22 686		MF A 52 75	11,700.00	6,000	1,950.00	09.07.31	/	2024.1		
10				22 1455		MF A 52 77	14,000.00	2,000	7,000.00	06.03.20.	/	2023.1		
11				22 688		MF A 52 78	14,000.00	2,000	7,000.00	88.11.26.	/	2023.1		
12				22 689		MS A 52 74	29.00	2,000	14.50	02.10.30.	해당없음	해당없음		

1-2.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담당자	한 광 현
연락처	880-0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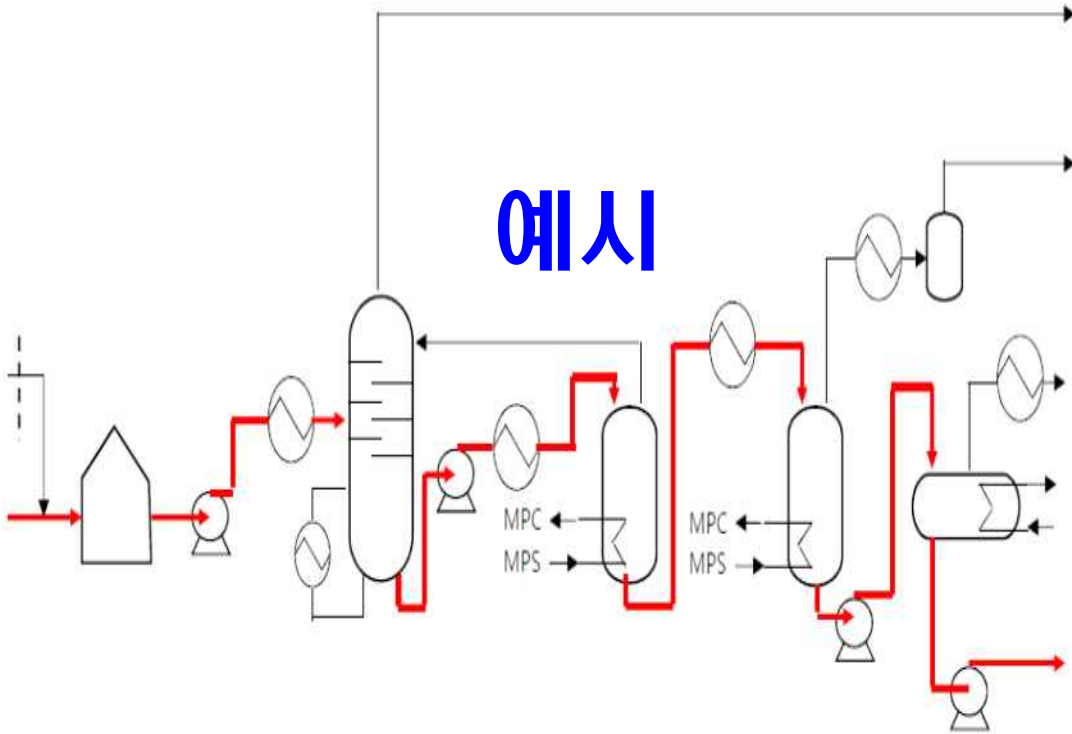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① 완공검사 연월일 및 번호																			
② 제조소등의 구분		제 조 소	③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 치 자	④ 성 명	⑤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설치장소																			
⑧ 설치 또는 변경 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2016년 04월 01일 제10-0000-00000호																	
⑨ 비 고	<table border="1"> <thead> <tr> <th>시 설</th> <th>유별 및 품명</th> <th>수량(ℓ)</th> <th>배 수</th> </tr> </thead> <tbody> <tr> <td>일일사용량</td> <td></td> <td></td> <td></td> </tr> <tr> <td>제조량</td> <td></td> <td></td> <td></td> </tr> <tr> <td>취급탱크</td> <td colspan="3">13기(반응기2, HOLD탱크2, 리시버8, 증발탱크1)</td> </tr> </tbody> </table>			시 설	유별 및 품명	수량(ℓ)	배 수	일일사용량				제조량				취급탱크	13기(반응기2, HOLD탱크2, 리시버8, 증발탱크1)		
	시 설	유별 및 품명	수량(ℓ)	배 수															
	일일사용량																		
	제조량																		
	취급탱크	13기(반응기2, HOLD탱크2, 리시버8, 증발탱크1)																	
예시																			
<p>「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04월 27일</p> <h2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음성소방서장</h2>																			
공 지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조소등을 양수하거나 인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완공검사필증은 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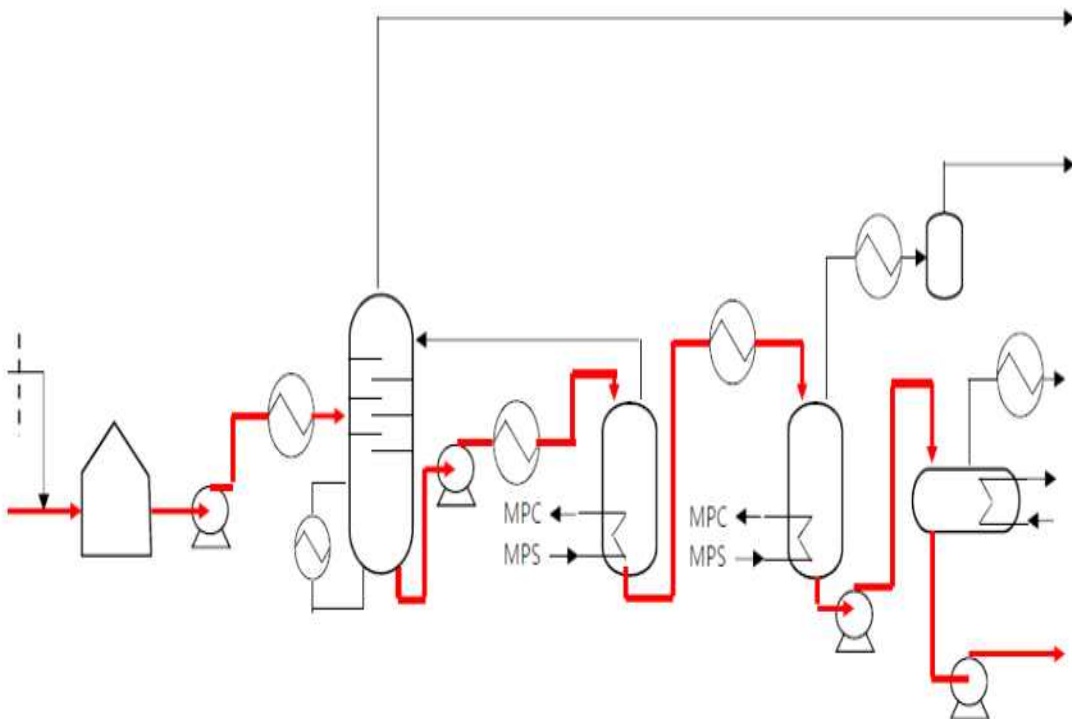
1-3.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공정도

PFD

예시



P&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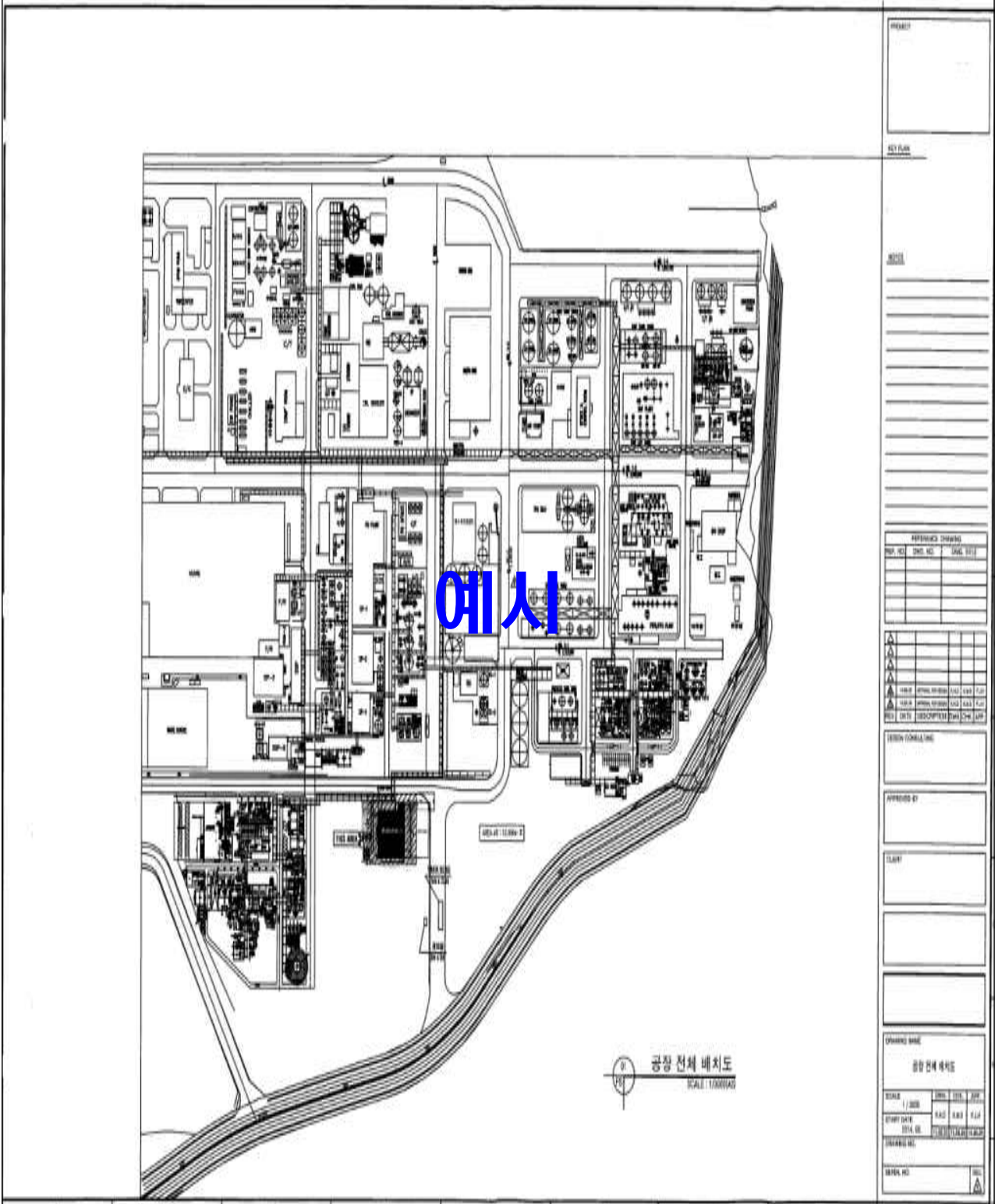


1-4. 위험물 제조소등 현장 배치도



1-5. 위험물 제조소등 도면

사업장 배치도(Layout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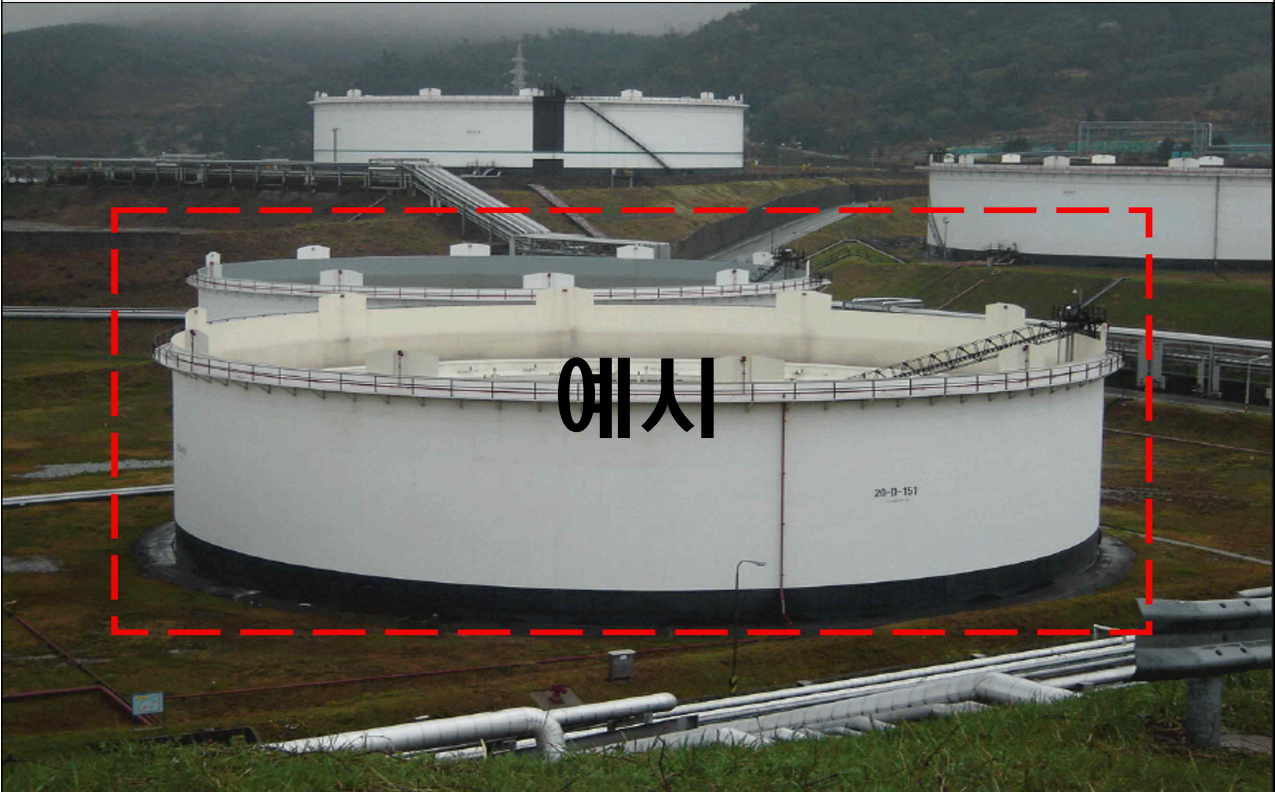


위험물 제조소등 도면(입면도)



1-5. 위험물 제조소등 현장 사진

고위험시설(지정수량 5만배 이상) - 옥외탱크저장소(TK-000), 사진 내 대상시설 빗금표시



고위험시설(지정수량 5만배 이상) - 옥외탱크저장소(TK-000)



위험물 제조소등 현장 사진(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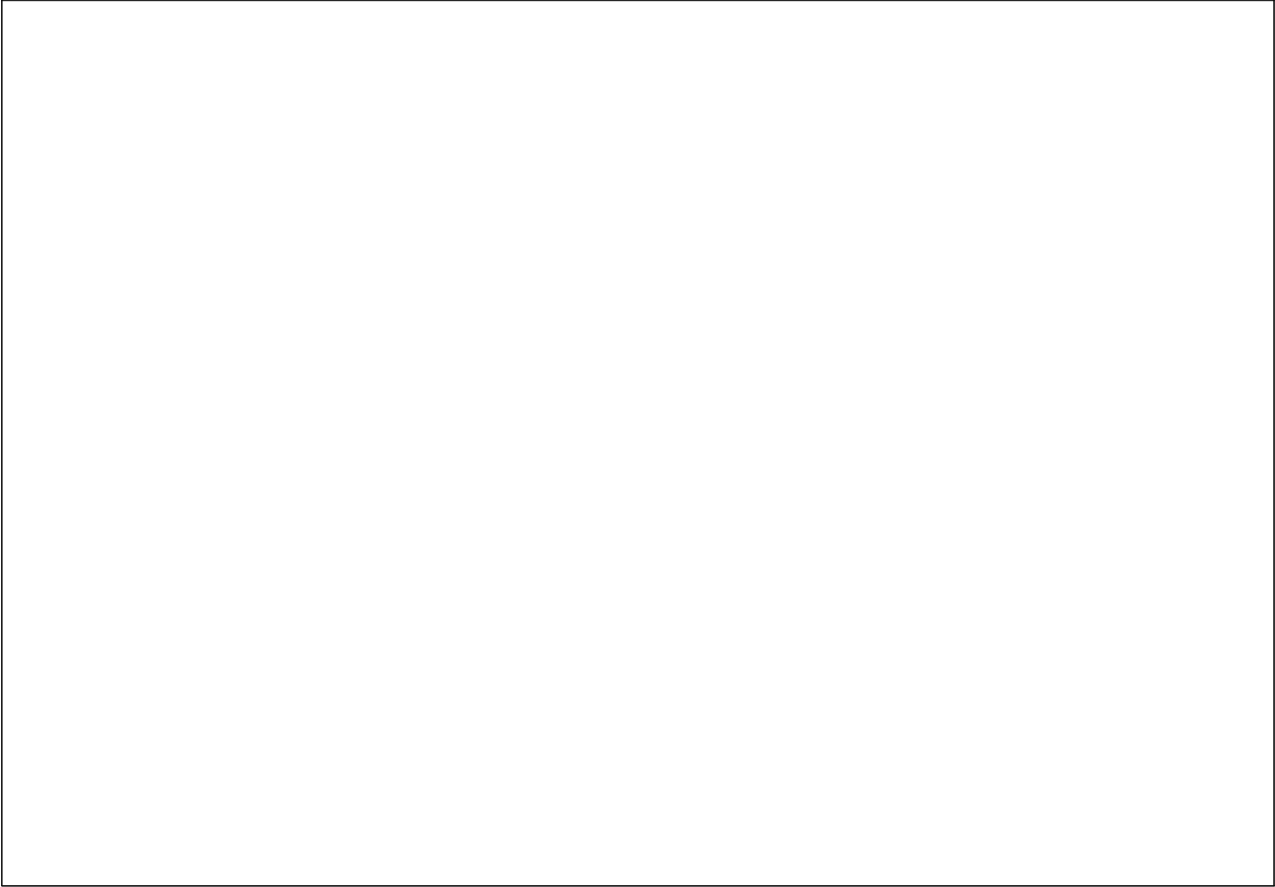
위험물 제조소등 현장 사진(전면)



위험물 제조소등 현장 사진(좌측면)



위험물 제조소등 현장 사진(우측면)



위험물 제조소등 현장 사진(후면)



[별첨 2] 피난 계획도

피난 계획도

지 하 층

안전공지

화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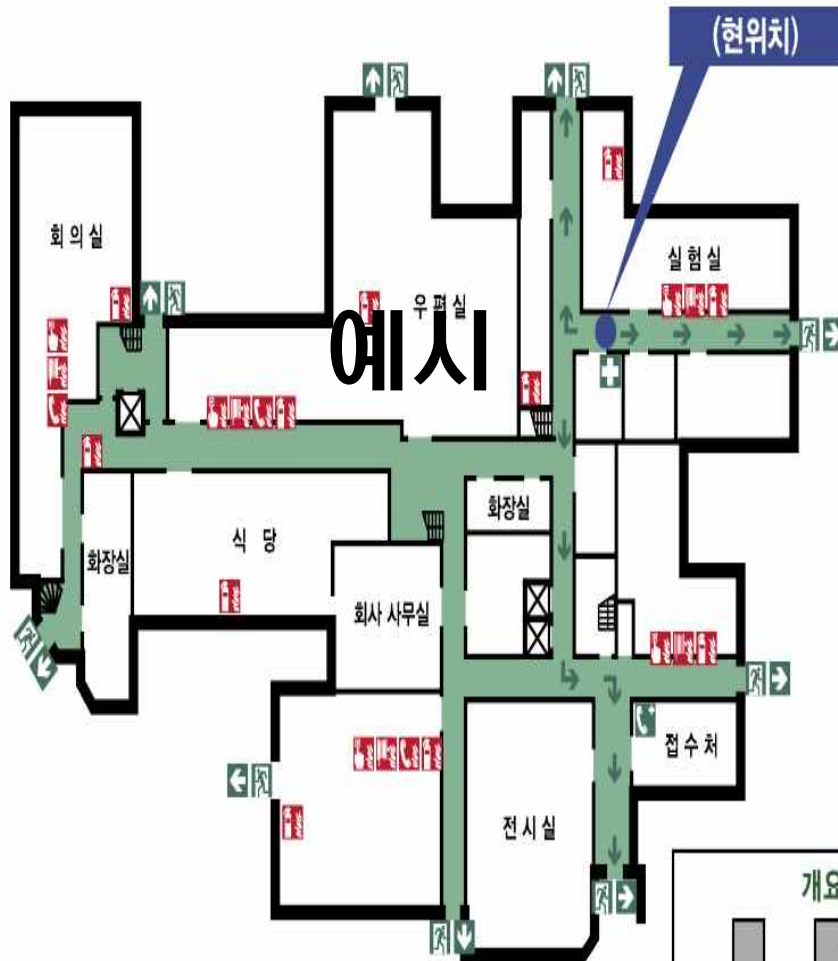
- 경보 비音を 누르시오
- 333으로 전화하십시오
- 당신의 이름과 위치를 말하십시오
- 상문과 문을 닫으시오
- 소방대가 제공하는 지시사항을 따르시오

대 피

- 전기 장치의 전원을 끄시오
- 소방대가 제공하는 지시사항을 따르시오
- 즉시 대피하십시오
- 건물 밖 집합 지점에 모이십시오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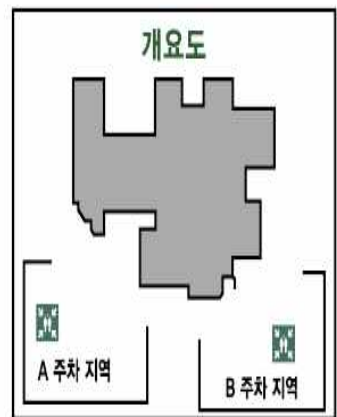
- 현 위치
- 탈출 경로
- ↔ 비상구 방향
- ☎ 비상 전화
- ☒ 응급 치료
- ☒ 집합 지점
- 소 화 기
- 화재 호스
- 화재 경보 전환 지점
- 화재 비상 전화
- ☒ 승강기
- 계 단



시설명

Plan designer
Date of plan design: 2006-03-29
Plan number: 0021
Revision number: 1

개요도



[별첨 3] 화학소방자동차 제원 및 사양

화학소방자동차 제원 및 사양

구 분	1호 소방차	2호 소방차	3호 소방차
종 류	CHEMICAL FIRE TRUCK	CHEMICAL FIRE TRUCK	굴절 탑 소방차
차량 번호	31라 2185	23가 1312	33다 4141
사 진			
1. 제조 회사	OOO특장(주)	OOO특장(주)	로젠bauer
2. 색상	RED	YELLOW	RED
3. 형식	KFM-C240-H18C25	KFM-C80-H90C12-B	K62-3200-20
4. 폼액 탱크 용량	3,200L	3,000L	3,000L
5. 물 탱크 용량	3,200L	-	바닥에서 노즐까지 60m
6. 앞·뒤 바퀴 거리	6,300 mm	4,900 mm	3,300mm
전 장	9,980 mm	8,280 mm	12,810 mm
전 폭	2,595 mm	2,595 mm	2,600mm
전 고	3,585 mm	3,130 mm	3,920 mm
7. 차체 중량	15.250 톤	11.180 톤	25 톤
총 중량	21.780 톤	13.705 톤	38.670 톤
8. 엔진 형식	현대 D6HC	현대 D6HA	벤츠 D2676LF
분당 회전수	450PS/1,900RPM	320PS/2,000RPM	571PS/ 1,900RPM
엔진기통수	6 Cylinder	6 Cylinder	8 Cylinder
9. 연료탱크 용량	Diesel 400L	Diesel 220L	Disel 310L
10. 주 펌프 형식	1단 원심펌프(A-1급)	1단 원심펌프(A-1급)	1단 원심펌프(N110급)
토출용량 및 압력	3,000L/min at 9.0kg/cm ² 6,400L/min at 15.0kg/cm ²	5,800L/min at 11.0kg/cm ²	12,000L/Min at 10.5kg/cm ²
11. 최고 속도	170 km/Hr	170 km/Hr	120 km/Hr
12. 타이어 Front	315/80R 22.5-20PR(S)	12R 22.5-16PR(S)	385/55R 22.5
타이어 Rear	12R 22.5-18PR(D)	12R 22.5-16PR(D)	315/70R 22.5
13. 토출구경개수(2½")	4 EA	4EA	4EA
토출구경개수(3")	Monitor 1EA	Monitor 1EA	Monitor 1EA(5')
14. 흡입구경(4½")	2 EA	2EA	2 EA
흡입구경(2½")	2 EA	2EA	2 EA
폼액 주입구(2½")	-	-	-
폼액 흡입구(2½")	-	1EA (40A)	1 EA
물탱크 보수구(1½")	2 EA(65A)	-	-
15. 차종	현대 16톤	현대 8.5톤	벤츠 액트로스 25톤(4055)
16. 년식	2024.02.28	2010. 12. 10	2019.03.21
17. 소유	HSB	HCP	HDO

* AMBULACE : 74대 6835 / 스타렉스/ 2016년 5월 23일

[별첨 4]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서식]

제 조 소 일반취급소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설치자 : (서명 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 []일반취급소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설치자		안전관리자		
사업소명		설치위치		
위험물 현황	품명	허가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시설명/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안전거리	보호대상물 신설여부	육안 및 실측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유공지	허가의 물건 존치여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	벽·기둥·보·지붕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문	변형·손상 등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바닥	채유·체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균열·손상·패임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단	변형·손상 등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환기설비·배출설비 등		변형·손상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담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팬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연성증기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외위험물취급설비	방유턱·바닥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채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집유설비·배수구·유분리장치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채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위험물의 누출·비산	누출방지설비 등 (이중배관 등)	채유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 지 장 치 등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역류방지설비 (되돌림관 등)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산방지설비	체유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 열 · 냉 각 · 건 조 설 비	기초·지주 등	변형·균열·손상·침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볼트 등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본체부	누설 유무	육안 및 가스검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볼트 등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냉재의 손상·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		부식·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측장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지시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송풍장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살수장치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살수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교반장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의 작동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위 험 물 취 급 설 비	기초·지주 등	변형·균열·손상·침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볼트 등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본체부	누설 유무	육안 및 가스검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위험물 취급탱크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볼트 등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냉재의 손상·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	부식·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측장치	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지시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송풍장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동장치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교반장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의 작동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초·지주·전용실 등	변형·균열·손상·침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본체	변형·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냉재의 손상·탈락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노즐·맨홀 등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유계·방유턱	변형·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관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관의 개폐상황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구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구내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용량의 적부	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유검사관	변형·손상·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교반장치	누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관	인화방지장치의 손상·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염방지장치 집합부의 고정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관내 장애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량장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고정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입구	폐쇄시의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전극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입구의 피트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밸브등	배관(플랜지·밸브 포함)	누설의 유무(지하매설배관은 누설점검 실시)	육안 및 누설점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반면과 이격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의 피트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방식 설비	단자함의 손상·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식전류(전위)의 적부	전위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설비등	전동기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량 및 유압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설비	배전반·차단기· 배선 등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선접합부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장치 등	제어계기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반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계(온도·압력·유량 등)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및 시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시설비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설비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뢰설비	돌침부의 경사·손상·부착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뢰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과 접촉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계시판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설비	소화기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그밖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그밖의 경보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서명(또는 인)	
옥내저장소의 형태	[]단층 []다층 []복합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설치자			안전관리자				
사업소명			설치위치				
위험물 현황	품명		허가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시설명/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안전거리	보호대상물 신설여부		육안 및 실측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유공지	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물	벽·기둥·보·지붕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문	변형·손상 등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바닥	채유·채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균열·손상·패임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단	변형·손상 등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다른용도부분과 구획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명설비	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환기설비·배출설비 등	변형·손상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화방지장치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덮개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팬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연성증기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선반 등		변형·손상 등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낙하방지장치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집유설비·배수구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설비	배전반·차단기· 배선 등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선접합부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폐쇄설비	돌침부의 경사·손상·부착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폐쇄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과 접촉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계시판	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설비	소화기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그밖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그밖의 경보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1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h2 style="margin: 0;">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h2>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p> </div> </div>					
옥외탱크저장소의 형태	[]고정지붕식 []부상지붕식 []지중탱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식 []해상탱크 []기타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설치자			안전관리자		
사업소명			설치위치		
위험물 현황	품명		허가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시설명/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안전거리	보호대상물 신설여부		육안 및 실측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유공지	허가의 물건 존치여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물분무설비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탱크의 침하	부등침하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초	균열·손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관의 손상 유무 및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	바닥판 (애물러판 포함)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장출부의 변형·균열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장출부의 토사퇴적·체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장출부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	빗물침투 방지설비	변형·균열·박리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균열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트의 손상·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관 등	배수관과 피트의 간격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균열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옆	옆판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균열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노즐·맨홀 등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윈드가드 및 계단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	지붕판	변형·균열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수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실(seal)기구의 적부(탱크 개방시)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루프트레인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폰툰·가이드폴의 적부(탱크 개방시)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		그밖의 부상지붕 관련 설비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관		부식·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화방지장치의 손상·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염방지장치 집합부의 고정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대기밸브 작동상태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관 내 장애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검측구·샘플링구·맨홀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균열·틈새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측장치		액량자동표시장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상태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온도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상태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상태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액면상하한경보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상태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밸브등	(플랜지·밸브 포함)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반면과 이격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의 피트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방식 설비	단자함의 손상·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식전류(전위)의 적부	전위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입구	폐쇄시의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전극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기밸브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설비등	전동기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량 및 유압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초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바닥·집유설비·유분리장치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붕·벽·바닥·방화문 등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실	환기·배출설비 등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명설비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유제등	방유제	변형·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관	배수관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관 개폐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구	배수구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구내의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집유설비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단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설비	배전반·차단기·배선 등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선접합부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뢰설비	돌침부의 경사·손상·부착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뢰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과 접촉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게시판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설비	소화기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그밖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그밖의 경보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	보온재	손상·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복재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탱크기둥	변형·손상의 유무(탱크 개방시)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탱크 개방시)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열장치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방식설비	단자함의 손상·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식전류(전위)의 적부	전위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2호서식]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지하탱크저장소의 형태	이중벽 (여 · 부) 전용실설치여부 (여 · 부)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설치자			안전관리자		
사업소명			설치위치		
위험물 현황	품명		허가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시설명/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탱크본체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상부	뚜껑의 균열·변형·손상·부등침하 유무		육안 및 실측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허가의 구조물 설치여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맨홀	변형·손상·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관	인화방지장치의 손상·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염방지장치 접합부의 고정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관 내 장애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연성증기 회수장치	부식·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측장치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액량자동표시 장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온도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량구	덮개 폐쇄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검사관	변형·손상·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감지설비 (이중벽탱크)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입구	폐쇄시의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전극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입구의 피트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밸브등	배관 (플랜지·밸브 포함)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반면과 이격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의 피트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방식 설비	단자함의 손상·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식진류(진위)의 적부	진위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점검함	균열·손상·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	누설·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폐쇄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설비등	전동기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량 및 유압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바닥·집유설비·유분리장치	균열·손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실	지붕·벽·바닥·방화문 등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환기·배출설비 등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명설비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설비	배전반·차단기·배선 등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선접합부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분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계시판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기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이동탱크저장소의 형태	컨테이너식 (여 · 부) 건인식 (여 · 부)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설치자			위험물운송자		
사업소명			상치장소		
위험물 현황	품명		허가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시설명/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상치장소	이격거리의 적부(옥외)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벽·기둥·지붕 등의 균열·손상 유무(옥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탱크본체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탱크프레임	균열·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탱크의 고정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금속구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및 조작시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본체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화방지장치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맨홀	뚜껑의 이탈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입구	뚜껑의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패킹의 마모상태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연성증기 회수설비	회수구의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호스결합장치의 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완충이음 등의 균열·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정전기제거설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이탈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호틀·측면틀	균열·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출밸브·자동폐쇄장치·토출밸브·드레인밸브·바이패스밸브·전환밸브 등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폐쇄장치의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금속결합구의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설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선접속부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도선	접지도선과 선단크립의 도통상태의 적부		확인시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의 회전상태의 적부		확인시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도선의 접속상태의 적부		확인시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입호스·금속결합구	균열·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설비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시·표지	손상 유무 및 내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기	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냉온재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컨테이너식	상자들	균열·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금속결합구·모서리볼트·U볼트	균열·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탱크검사(시험) 합격확인증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저장소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옥외저장소의 면적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설치자		안전관리자			
사업소명		설치위치			
위험물 현황	품명	허가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시설명/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안전거리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육안 및 실측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유공지	허가의 물건 존치 여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표시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반면 등	지반면	패임의 유무 및 배수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구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분리장치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선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낙하방지조치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게시판	손상 유무 및 내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설비	소화기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그밖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경보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살수설비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 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 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 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 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 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 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 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 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 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 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 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 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 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 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란에 각각 √ 표시를 합니다.
 - 나.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 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 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라.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 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 나.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 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 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 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 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 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 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암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암반탱크의 용적				안전관리자					
설치자				설치위치					
사업소명				허가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현황		품명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시설명/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탱크본체	암반투수도	투수계수의 적부		투수계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탱크내부증기압	증기압의 적부		압력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탱크내벽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강재의 이탈·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리상태	유입지하수량	지하수 충전량과 비교치의 이상 유무		수량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벽공	균열·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하수압	수압의 적부		수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계시판		손상 유무 및 내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계	작동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및 조작시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본체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화방지장치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정전기제거설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이탈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밸브등	배관 (플랜지·밸브 포함)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반면과 이격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의 피트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채유·채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방식 설비	단자함의 손상·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식전류(전위)의 적부		전위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입구	폐쇄시의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전극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설비	소화기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그밖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그밖의 경보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주유취급소의 형태	[]옥내 []옥외 고객이 직접주유하는 형태 (여·부)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설치자				안전관리자			
사업소명				설치위치			
위험물 현황	품명		허가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시설명/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공 지 등	주유·급유공지	장애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반면	주위지반과 고저차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구·유분리장치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담	균열·손상·경사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 축 물	벽·기둥·바닥·보·지붕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문		변형·손상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간판등		고정의 적부 및 경사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다른용도와와의 구획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멍·구덩이		구멍·구덩이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시 대 등	감시대	위치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시설비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장치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송기기등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 용 탱 크 · 폐 유 탱 크 · 간 이 탱 크	상부	허가 외 구조물 설치여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맨홀		변형·손상·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과잉주입방지장치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연성증기회수밸브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액량자동표시장치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온도계·계량구		작동상황의 적부 및 변형·손상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탱크본체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감시관		변형·손상·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감지설비 (이중벽탱크)		경보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입구		접지진극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입구의 피트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 기 관		인화방지장치의 손상·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염방지장치 접합부의 고정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 관 · 밸 브 등	배관(플랜지·밸브 포함)	도장상황의 적부·부식 및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의 피트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방식 설비	단자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점검합	균열·손상·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	폐쇄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 정	접합부	누설·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볼트	부식·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노즐·호스	누설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균열·손상·결합부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종표시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	누설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 유 설 비	유량계	누설·파손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시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 유 설 비	충돌방지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정전기 제거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 수 식		호스릴	누설·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호스상승기능·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셀 프 용	긴급이송정지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안전대책노즐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탈락시정지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연성증기회수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만량(滿量)정지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긴급이탈커플러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오(誤)주유정지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정량정시간제어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노즐	개방상태고정기 불가한 수동폐쇄장치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확산방지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객용”표시판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차정지위치·용기위치표시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사용방법·위험물의 품명표시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고객용”표시판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 설 비 실 등	벽·기둥·보·지붕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화문	변형·손상의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바닥·점검포트 집유설비	균열·손상·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환기·배출설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명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국한설비·수용설비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설비	배선·기기의 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연성증기검지경보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대설비	(증기)세차기	배기통·연통의 탈락·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게시판	그밖의 설비	위치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계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설비	소화기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그밖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그밖의 경보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난설비	유도등본체	점등상황의 적부 및 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시각장애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전원	정전시 점등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7호서식]

이송취급소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이송취급소의 총연장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설치자				안전관리자			
사업소명				설치위치			
위험물 현황		품명		허가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							
시설명/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이송취급소	울타리 등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출방지설비	성토상태	손상·갈라짐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사·굴곡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분리장치		배수구개폐상황의 적부 및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설비	안전거리	보호대상물의 신설 여부		육안 및 실측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유공지	허가 외 물건의 존치 여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실	지붕·벽·바닥·방화문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환기·배출설비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명설비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기초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접지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바닥·집유설비·유분리장치	접합부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그장치	주위·바닥·집유설비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유·체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본체	허가의 물건의 존치 여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출구	로딩암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내압방출설비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상·해상설치	안전거리 내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육안 및 실측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보유공지 내 허가외 물건의 존치 여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관 · 플 랜 지 등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의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표면과 이격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관	지하 매설배관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거리 내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육안 및 실측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해저 설치배관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랜	플랜지· 교체밸브·제어밸브 등	해저매설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볼트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개폐표시의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잠금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	등	밸브개폐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채유·채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랙·지지대 등	등	검지장치 작동상태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피트 등	등	방호설비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균열·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기구	등	채유·채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 여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해상배관 및 지지물의 방호설비	등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긴급차단밸브	등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표시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장애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접지	등	단선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합부의 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절연물 등	등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절연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열·보온설비	등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의 기능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방식설비	등	단자함의 손상 및 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선 및 단자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식전위(전류)의 적부	전위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응력검지장 치	등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응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시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터널내증기 체류방지조치	등	급배기덕트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출설비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화방지장치의 손상·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기구 부근의 화기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속설비	등	가연성증기경보장치 작동상태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구·집유설비·유분리장치의 균열·손상·채유·채수·토사퇴적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수펌프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명설비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호설비·안전설비 등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계 (압력경보)		본체 및 방호설비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시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운전상태감시장치	유량계 (유량경보)	본체 및 방호설비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시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온도계 (온도과승검지)		본체 및 방호설비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시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과대진동검지장치		본체 및 방호설비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시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검지장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제어장치		수동기동장치 주위장애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안전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설비 및 통보설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부의 풀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순찰차등	순찰차	배치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재기재의 종류·수량·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자재등	창고	건물의 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정리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자재	기자재의 종류·수량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자재의 변형·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설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볼트풀림 등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진장치 등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뢰설비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뢰도선의 단선·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설비		배선 및 기기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시·표지·계시판		기재사항의 적부 및 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설비	소화기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그밖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8호서식]

[] 옥내 [] 옥외		소화전설비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소화설비의 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수원	수조	누수·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원량·상태	수원량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유물·침전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수장치	부식·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흡수장치	흡수조	누수·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물의 양·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급수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수경보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압송수기관	전동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본체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탱크	누설·부식·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회유	현저한 노후의 유무 및 양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전압의 적부	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동력전달장치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수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장치	냉각수의 누수 유무 및 물의 양·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배기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의 가연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	누수·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암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기판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동기 제어장치	제어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관리상 지장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원전압	전압의 지시상황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원등의 점등상황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기 및 스위치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휴즈류	개폐상황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손상·용단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류·용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차단기	예비품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점의 소손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결선접속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풀림·탈락·피복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폴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등	밸브류	개폐상태 및 작동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여과장치	여과망의 손상·이물의 퇴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누설·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드레인피트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전	소화전함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속공구의 비치상태 및 표지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호스 및 노즐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량 및 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시등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점등 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예비동력원	본체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탱크	절연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부식·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윤활유	밸브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저한 노후의 유무 및 양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장치	냉각수의 누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물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배기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 가연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설비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19호서식]

<input type="checkbox"/> 물분무소화설비 <input type="checkbox"/> 스프링클러설비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소화설비의 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수 원	수조	누수·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원량·상태	수원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유물·침전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수장치	부식·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흡 수 장 치	흡수조	누수·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물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벨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급수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수정보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 압 수 내 장 치 관	전동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본체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탱크	누설·부식·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벨브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윤활유	현저한 노후의 유무 및 양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전압의 적부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동력전달장치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장치	회전수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수의 누수 유무 및 물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배기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의 가연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수·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기판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조작 부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동기 제어장치	제어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관리상 지장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원전압	전압의 지시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원 등의 점등상황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기 및 스위치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휴즈류	개폐상황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손상·용단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류·용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차단기		예비품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점의 소손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결선접속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등	밸브류	풀림·탈락·피복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여과장치	개폐상태 및 작동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여과망의 손상·이물의 퇴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누설·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드레인피트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헤드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각도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예비동력원	본체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절연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탱크	누설·부식·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윤활유	현저한 노후의 유무 및 양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장치	냉각수의 누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물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배기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의 가연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설비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20호서식]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소화설비의 호칭번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수원	수조	누수·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원량·상태	수원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유물·침전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수장치	부식·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흡수장치	흡수조	누수·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물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급수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수경보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압송수장치	전동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본체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탱크		누설·부식·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윤활유		현저한 노후의 유무 및 양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동력전달장치	단자전압의 적부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수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장치	냉각수의 누수 유무 및 물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배기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의 가연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펌프	누수·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기판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약제저장탱크	탱크	누설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접속부의 이탈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관의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약제		압력계 지시상황의 적부(압력탱크)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약제혼합장치	변질·침전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양액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수동기동장치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기동장치	가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스위치·압력탱크)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계 지시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재감지장치(감지기·폐쇄형헤드)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 장애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동기 제어장치	제어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관리상 지장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원전압	전압의 지시상황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원등의 점등상황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기 및 스위치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휴즈류	손상·용단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류·용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예비품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차단기	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점의 소손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결선접속	풀림·탈락·피복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수·압력감지장치	자동경보밸브(유수작동밸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리타딩챔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스위치	단자의 풀림·이탈·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표시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등	밸브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태 및 작동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여과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여과망의 손상·이물의 퇴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누설·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장상태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드레인피트의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저부포주입법의 외부격납함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호스 격납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포방	포헤드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착각도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기취입구의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포챔버	본체의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봉관의 부착상태 및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출	공기수입구 및 스크린의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포모니터노즐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기수입구 및 필터의 막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포소화전	소화전함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호스 및 노즐	부속공구의 비치 상태 및 표지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시등	수량 및 기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점등 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결송액구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예비동력원	자가발전설비	본체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절연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탱크	누설·부식·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윤활유	밸브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	현저한 노후의 유무 및 양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장치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수의 누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물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배기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의 가연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설비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부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21호서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소화설비의 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이산화탄소소화약제장용기등	소화약제저장용기	설치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약제	양 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압식 용기밸브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기밸브 개방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경보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시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액면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냉동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출밸브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용가스용기등	용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스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기밸브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기밸브개방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관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선택밸브	손상·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수동기동장치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기동장치	자동수동 전환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재감지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지장해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스위치	단자의 풀림·탈락·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장치	제어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관리상 지장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원전압	전압의 지시상황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원등의 점등상황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기 및 스위치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휴즈류	손상·용단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류·용량의 적부 및 예비품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차단기	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집점의 소손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결선접속	풀림·탈락·피복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태 및 작동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등	밸브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태 및 작동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역류방지밸브	부착방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누설·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과피관·안전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출표시등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점등 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분사헤드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동식노즐	호스·호스릴·노즐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노즐개폐밸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예비동력원	본체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절연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탱크	누설·부식·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윤활유	현재한 노후의 유무 및 양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장치	냉각수의 누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물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배기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의 가연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설비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22호서식]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소화설비의 호칭번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소화약제저장용기	설치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약제	양 및 내압의 적부	육안 및 압력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압식 용기밸브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압식 용기밸브 개방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출밸브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계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압식 용기	설치상황의 적부 및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스량	양·내압의 적부	육안 및 압력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압식 용기밸브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압식 용기밸브 개방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압식 용기 압력조정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용 가스용기 등 용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스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용 가스용기 등 용기밸브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용 가스용기 등 용기밸브개방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관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선택밸브	손상·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선택밸브	개폐상황 및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동기동장치	조작부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동기동장치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동기동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기동장치		자동수동 전환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기동장치	화재감지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기동장치		화재감지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기동장치	화재감지장치	감지장해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기동장치		화재감지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장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스위치	단자의 풀림·탈락·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스위치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반		조작관리상 지장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장치	전원전압	전압의 지시상황 및 전원등의 점등상황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장치		계기 및 스위치류	변형·손상 및 단자의 풀림·탈락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장치	계기 및 스위치류	개폐상황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휴즈류		손상·용단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휴즈류	종류·용량의 적부 및 예비품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차단기	단자의 풀림·탈락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점의 소손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결선접속	풀림·탈락·피복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등	밸브류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태 및 작동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역류방지밸브	부착방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누설·변형·손상·부식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과피관·안전장치	변형·손상·부식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출표시등	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점등의 상황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분사헤드	변형·손상·부식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동식노즐	호스·호스릴·노즐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노즐개폐밸브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예비동력원	본체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상소음·진동·발열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절연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탱크	누설·부식·변형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밸브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유회유	현저한 노후의 유무 및 양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	부식·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장치	냉각수의 누수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물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부식·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배기장치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의 가연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설비	부식·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부식·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부주위의 장애물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23호서식]

분말소화설비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소화설비의 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분말소화약제저장용기등	소화약제저장용기	설치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화약제	양 및 내압의 적부	육안 및 압력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추압식	용기밸브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기밸브 개방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지시압력계	변형·손상 유무 및 지시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출밸브	변형·손상·부식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장치	변형·손상·부식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정압작동장치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압식	용기	설치상황의 적부 및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스량	양·내압의 적부	육안 및 압력측정
		용기밸브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기밸브 개방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조정기	변형·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용가스용기등	용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스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기밸브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기밸브개방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관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선택밸브	손상·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 및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수동기동장치	조작부주위의 장애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지의 손상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자동수동전환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재감지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지장해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보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압력스위치	단자의 풀림·탈락·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장치	제어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작관리상 지장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원전압	전압의 지시상황 및 전원등의 점등상황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계기 및 스위치류	변형·손상 및 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황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휴즈류	손상·용단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류·용량의 적부 및 예비품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차단기	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점의 소손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결선접속	풀림·탈락·피복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등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개폐상태 및 작동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역류방지밸브	부착방향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관	누설·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과과관·안전장치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방출표시등	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점등 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분사헤드	변형·손상·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이동식노즐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호스·호스릴·노즐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노즐개폐밸브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노즐개폐밸브		부식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본체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탱크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탱크	이상소음·진동·발열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절연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윤활유	누설·부식·변형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연료량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	밸브개폐상태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저한 노후의 유무 및 양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냉각장치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해액량 및 단자전압의 적부	육안 및 전압측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급배기장치	냉각수의 누수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물기의 양·상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축전지설비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동장치	부식·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위의 가연물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24호서식]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탐지설비의 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감지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지장해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중계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신기 (통합조작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구역일람도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발신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전원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환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선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속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정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다.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